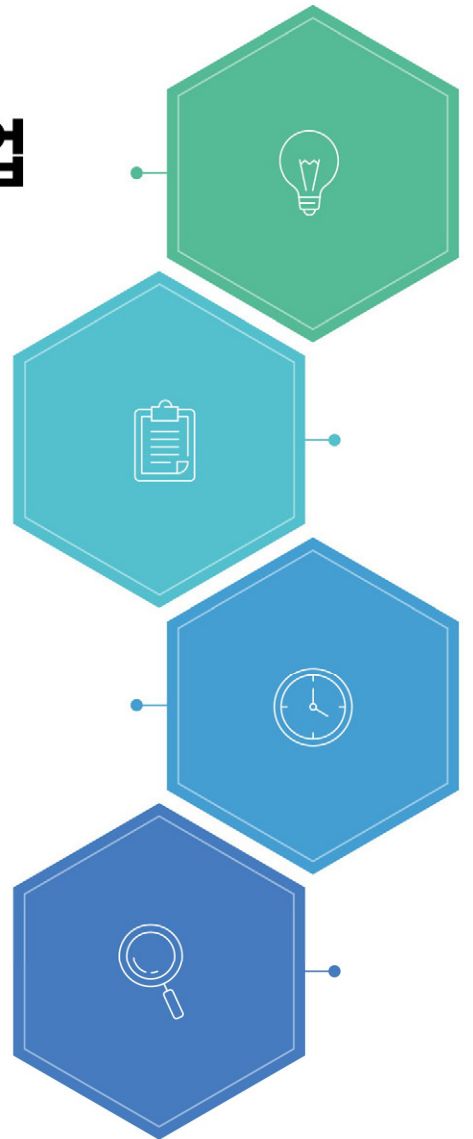


본 업무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업예산에 따라 보조사업의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보조금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자치단체 및 보조금 관리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보조사업기관은 본 업무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의 기준을 정하여 수행하도록 함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tents

Part

01



재정지원 일반 / 1

- I. 보조금 집행체계 2
- II. 재정지원사업 7

Part

0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25

- I. 총 칙 26
- II. 사업추진체계 27
- III.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30
- IV. 주요 사업내용 63
- V. 사업참여기업 재심사 75
- 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81

Part

03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151

- I. 총 칙 152
- II. 사업추진체계 154
- III.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157
- IV. 주요 사업내용 168

Part
04


부정수급 / 213

- I. 총 칙 214
- II. 사업추진체계 216
- III.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223

Part
05


재정지원 세부조치기준 / 249

- 1.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치기준 250
- 2. 행정처분 적용기준 252
- 3. 가중처분 261
- 4. 선정취소·약정해지 및 지급중지 적용 263
- 5.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270
- 6. 부정수급 적용 274
- 7. 소멸시효 278
- 8. 부정수급에 따른 명단 등 공표 286
- 9. 행정처분 절차 287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재정지원 일반

Part

01

I. 보조금 집행체계

1. 용어의 정의	2
2. 보조금 반환	3
3.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3
4. 지난 회계연도부터 계속되는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6
5. 기 타	6

II. 재정지원사업

1. 용어의 정의	7
2. 재정지원 지원 필요 요건	8
3.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지원	9
4.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필수 사용	10
5. 매월 e나라도움시스템 통한 집행점검 실시	11
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정산	12



I 보조금 집행체계

1. 용어의 정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보조금 반환

● 보조금 반환시 수입(세입)과 지출반납(여입) 처리기준

- 근거법령: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483(2012.11.22.), 국고과-169(2013.1.22. 질의회시)

- 일반원칙: 당해연도 발생분 당해연도 예산과목으로 지출반납(여입), 전년도 발생분 수입(세입)

* 부정수금액 반환도 동일함

「국고금관리법」 제14조, 제29조

제14조(지난 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3.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 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 '24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 ~ 2.14) : 4,931,500원

$$* 2,500,000\text{천원(보조금)} \times 2\%(\text{금리}) \times 36/365 = 4,931,500\text{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 ~ 7.9) : 7,945,200원

$$* 1,000,000\text{천원(보조금-1차교부액)} \times 2\%(\text{금리}) \times 145/365 = 7,945,200\text{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 ~ 12.20) : 224,650원
 - * $100,000\text{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times 2\%(\text{금리}) \times 41/365 = 224,650\text{원(일원단위 절사)}$
 -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 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 '24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 ~ 2.14) : 4,931,500원
 - * $2,500,000\text{천원(보조금)} \times 2\%(\text{금리}) \times 36/365 = 4,931,500\text{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 ~ 7.9) : 7,945,200원
 - * $1,000,000\text{천원(보조금-1차집행액)} \times 2\%(\text{금리}) \times 145/365 = 7,945,200\text{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 ~ 12.20) : 898,630원
 - * $100,000\text{천원(집행잔액)} \times 2\%(\text{금리}) \times 164/365 = 898,630\text{원(일원단위 절사)}$



4. 지난 회계연도부터 계속되는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 (집행) 지난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가능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의 이월, 지난 회계연도 지출 등은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가능
 - * 예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2023.9.1.~2024.8.31.의 경우, 2023.9.1.~2023.12.31. 기간은 2023년 예산으로 지급, 2024.1.1.~2024.8.31. 기간은 2024년 예산으로 지급
- (이월) 보조사업자(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편성시 고려사항) 회계연도가 연속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예산반영

5. 기 타

- 보조금 집행에 대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 보조금 집행 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내내역사업(일반인력 ↔ 전문인력) 간 예산 조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 후 3일 이내 고용노동부로 결과 제출

II 재정지원사업

1. 용어의 정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하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말한다.



- 「사업참여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 「지원개시일」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각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 「지원기간」은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한다.
- 「약정기간」은 지원약정서 체결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 예시: 지원약정서 체결일 '23.6.20. 지원기간 '23.7.1. ~ '24.6.30. 이 경우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지원종료일인 '23.6.20. ~ '24.6.30.임
- 「최초지원일」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한 해당 재정지원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을 말한다.
- 「지원가능기간」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 「최대지원기간」은 지원가능 기간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최대 기간을 의미한다.
- 「자체고용근로자·기존근로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 「참여근로자」는 일자리창출 사업(일반인력, 전문인력)을 지원받기 위해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재정지원 지원 필요 요건

-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용 요건이 지원 개시 이후 미충족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시점부터 계속 지원
- * 다만, 미충족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체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 없이 계속 지원

- 유급근로자 판단시점: 재정지원 사업을 공고한 월의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전문인력의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기업*에 대한 적용 사항

* 피해기업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발급된 기업에 한함

● 재정지원사업 「지원가능기간」 확대

- 피해기업은 「지원가능기간」이 도과 되더라도 「최대지원기간」이 남아 있고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예) 일자리창출사업: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 최대지원 기간 3년 중 남은 기간이 존재하면 5년(지원 가능기간)이 경과하여도 지원(지원요건은 기존과 동일)

* 전문인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요건 완화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재참여 시 종료 후 기간(24개월 경과) 및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 피해기업에 대해 지역자율 계획 수립으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심사기준 완화, 지원 비율 상향 등 상황에 맞게 지원 가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 시행시기: 2019.4.6. 특별재난지역 선포(대통령 공고 제286호) 이후 해당 기업



4.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필수 사용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입력 철저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지원내용 및 실적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미입력 시, 발생하는 자료 취합 등 불필요한 부수적 업무 발생을 방지
-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자치단체는 지급처리 완료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지급처리 후, 실 집행처리)

■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 시스템 사용 관련 내용

- (기업) 지원금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하 SEIS)을 이용하여 신청금액·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 → 구비서류를 전자화 하여 첨부 →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 신청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사회적기업 인·지정 취소, 보조금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담당자) 기업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지급금액을 SEIS에 입력 확정 후 지원금 지급
 -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SEIS에서 출력하여 지원금 지출부서에 제출 → 지원금 지급
 - * SEIS에 매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경우에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가 발급됨. 또한, 기업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정보가 정확히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예산집행 추이, 정산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 담당 공무원은 시스템 등록자료에 오류가 없음에도 지출 등의 증빙을 위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됨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위변조 방지 구현

주의

당월에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SEIS에 입력을 누락하여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차월에 지원금 신청 입력이 불가능함

5. 매월 e나라도움시스템 통한 집행점검 실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
 - 광역자치단체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매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실적 점검을 관리
 -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행실적 점검 (익월 15일까지 완료)
 - * e나라도움시스템 內 'e호조실적수기등록관리' 메뉴 등 사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2. 7.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규격·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정산

● (정산제출시기) 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 자치단체 정산보고

* '24년 회계연도 사업 정산 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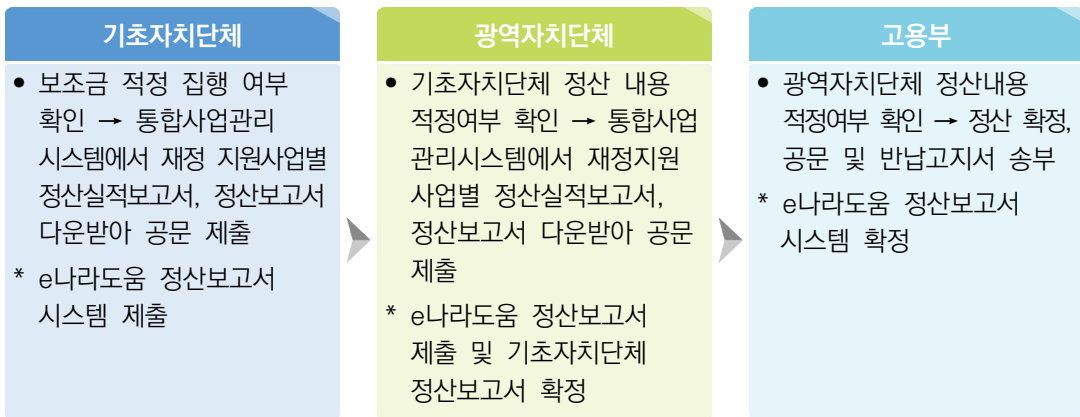
● (정산) 당해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기업 환수액, 전년도 이전 환수액 등을 정산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 및 e호조 정산보고서를 송신하여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제출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정산업무경로: 재정지원관리>재정지원정산관리

* e나라도움 정산업무경로: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실적보고접수

● 정산일정 및 절차

일자리창출(전문인력포함)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_____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____시__분부터 __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 시간외 근로수당: _____원(월 시간분)
 - 야 간 근로수당: _____원(월 시간분)
 - 휴 일 근로수당: _____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활용(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개월)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유급 []무급)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Paid []Unpaid)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p>1) 월 통상임금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 원, () 수당: ()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원</p> <p>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p>
7. Payment	<p>1) Monthly Normal wages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won * Wage during probation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won</p> <p>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p>
8. 임금지급일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직접 지급,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In person,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p>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호텔, 펜션 등),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 원</p> <p>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 원</p> <p>※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p>
10. Accommodations and Meals	<p>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Provided,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Detached houses, []Goshiwans, []Studio flats,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Container boxes, []SIP panel constructions,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 won/month</p> <p>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breakfast, []lunch,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 won/month</p> <p>※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p>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 (YY/MM/DD)
사용자: Emplo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근로자: Employe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_____

성명	생년월일	기능 및 자격	고용 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기초사항												
					기본 시간급	기본 일급	기본 월급	부양 가족수	1인당 지급액	계산 시간										
구분 내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				현금	그 밖의 임금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금	현품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Part 02

I. 총 칙			
1. 목 적	26		
1. 추진근거	26		
II.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27		
2. 운영주체별 역할	28		
III.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1. 참여기업 선정	30		
2. 참여기업 공모	35		
3.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8		
4. 지원약정 체결·변경	43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47		
6. 사업참여기업의 의무	54		
IV.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기간	64		
2.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65		
3. 지원금 신청	69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실적보고	71		
V. 사업참여기업 재심사			
1.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75		
2. 재심사 대상	75		
3. 재심사 신청	77		
4. 재심사 및 선정	79		
5. 지원약정 체결·변경	80		
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I 총 칙

1. 목 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주체별 역할과 사업 수행 절차·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II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2. 운영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 본 부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 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및 실적 관리
- 지방자치단체, 사업참여기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 총괄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대책 수립 총괄

■ 지방고용노동관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업무 지원
- 참여근로자 알선
- 사업참여기관 모니터링·점검 지원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지원 등

2-2.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연간 일자리창출지원 계획공고(일정, 규모 등)
- 일자리창출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 개최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참여기업 공모·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심사(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기업·지역연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및 사업수행결과 고용노동부 보고
- 기초자치단체 지원 및 지도점검 총괄
- 기초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재교부

■ 기초자치단체

- 지역별 제도안내 등 홍보
- 일자리창출지원 신청 접수 및 검토, 심사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 체결
- 참여근로자 취업지원(상담, 알선 및 승인)
 - *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지원
- 지원금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기업·지역연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수행결과 광역자치단체 보고
- 일자리창출사업 지도 점검

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모델 발굴 지원
- 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자치단체 공무원·공공기관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교육
-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구축·운영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III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1. 참여기업 선정

1-1.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 행정해석 「사회적기업 인증을 조건으로 참여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약정체결 기준」 참조
-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20.6.1. ~ '23.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23.6.12.인 경우, 지정종료일 '23.5.31.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 * 예시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20.6.1.~'23.5.31.이고 일자리창출사업 접수마감일이 '23.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가능

지정기간 (3년차)	[Timeline bar with 8 segments]							
일자	'20. 6.1.	'23. 5.20.	5.22.	5.27.	5.30.	'23. 5.31.	6.1.	6.12.
예시	지정 기간 시작일	인증 신청일 (예2: ○)	접수 마감일 (예2)	인증 신청일 (예1: ○)		지정기간 (3년) 종료일	인증 신청일 (예1: ×)	접수 마감일 (예1)

1-2.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 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 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별표 1)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 4)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확인절차

□ 고용조정 이력

○ 재정지원관리 > 일자리창출 사업관리 > 일자리창출 접수·검토보고서

신청기업명	접수일	사업장관리번호	검토보고서 작성일	제출여부	장애인공단 지원여부
-------	-----	---------	-----------	------	------------

2016-11-14 15:01

38587003290

검토보고서 등록

고용조정이력 ①

○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회

1. 기본정보		(조회일 : 2016-11-21)	
조회결과	상만영농조합법인 기업으로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상실사유정보			
번호	상실월	상실자수	상실사유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 고용조정이력을 확인한 이력을 저장하시려면 고용조정이력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고용조정이력저장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회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검토보고서	고용보험조회이력정보 ③
--------	---------	-----------------	-------	--------------

고용보험조회 이력정보

조회자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자	조회일	2016-11-18
조회기간			

고용보험조회 이력정보 출력 ④

번호	조회일	사업장명	폐업여부	상실월	상실자수	상실사유	상실사유코드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자으로 조회한 이력이 없습니다.							

- 1) 해당 기업의 고용조정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조정 이력정보 조회
- 2) 고용조정이력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이력을 저장
- 3) 고용보험조회이력정보 탭에서 이력 확인
- 4) 고용보험조회이력정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이력 출력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자격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적가치 수준이 '우수'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노숙인, 도박·알콜중독자, 갱생보호자, 보호종료아동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관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한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컨소시엄형 사회적기업에 한하여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지원기간·지원비율 등을 달리할 수 있음(인증사회적기업·재참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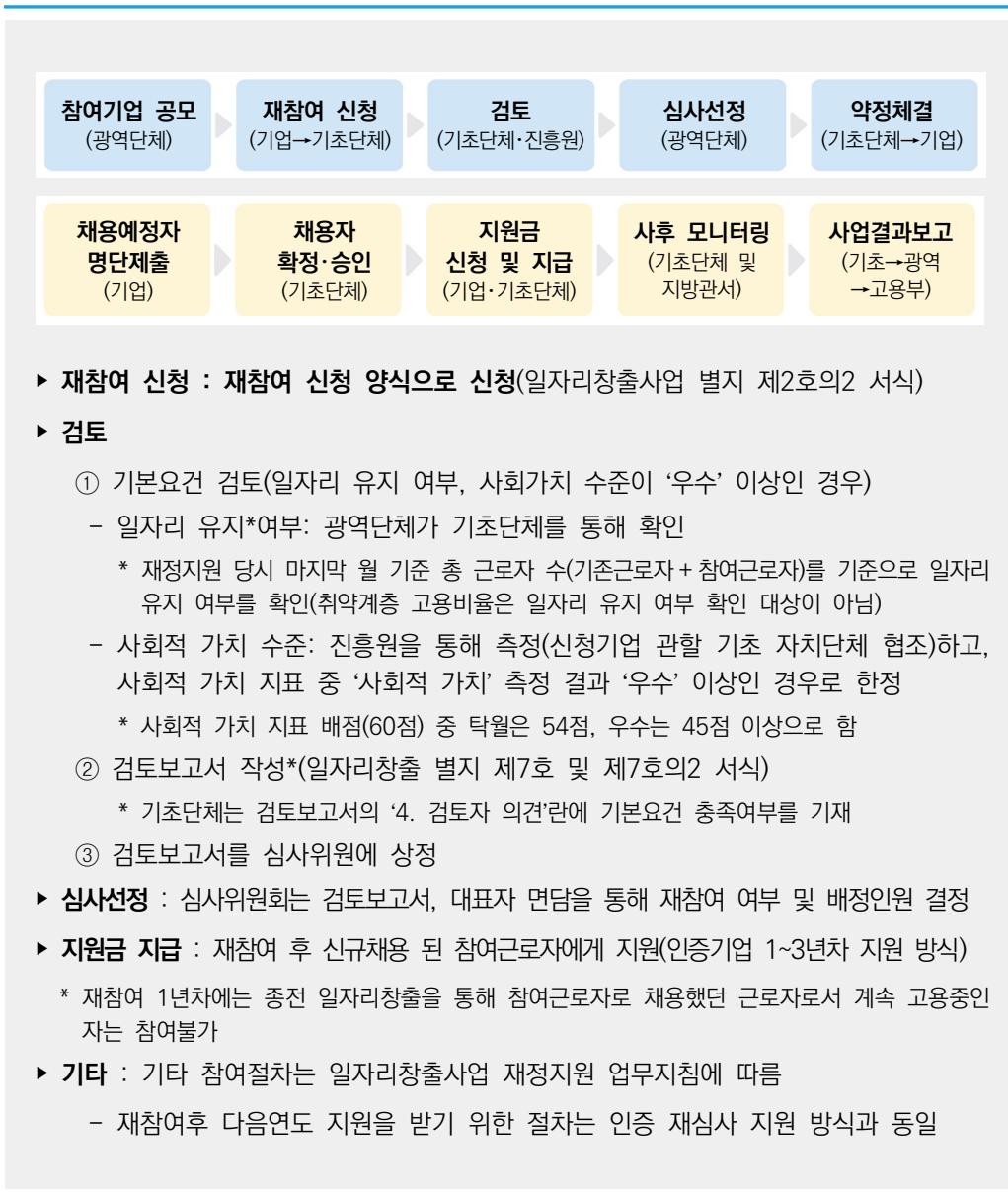
-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표'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되, 공정성을 위하여 진흥원에 평가 의뢰 가능(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청소업 등 업종에 따라 고용근로자가 원청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인원을 제외하고 일자리 유지 여부 판단
- 재참여 추진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2. 참여기업 공모

※ '24년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공모는 운영하지 않음[지침 내 관련 내용 등은 참조됨]

2-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확인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고문을 발송

- (접수기간)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15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2-2. 모집 시기 및 횟수

- (시기) 매년 해당년도의 재정지원 지침 시달 후 1월 중 공모하여 2월말까지 심사 및 선정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른 재정지원 사업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공모일정 조정 가능

- (횟수) 매년 초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모

2-3. 사업신청서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확인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 (재정 상태 확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 e-러닝 이수확인(해당기업 ID조회후 이수 확인)
- 사업보고서(해당기업)

- 관할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신청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업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신청기업에 이송사실을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2-4. 참여자격 등 확인·조회 및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등과 관련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조회(필요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문으로 조회 의뢰)
 - ①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여부 확인(별표 4)
 -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것
 - * (고용유지조치)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② 종전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여부
 - *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기간, 지원 금액, 지원인원 및 사업기간 중 약정해지 등 제재 처분 내용 등
 - ③ 기타 신청기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청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자격에 관한 조회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통보



2-5.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검토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실체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기업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SEIS)을 통해 송부 [별지 제7호서식]
- 광역자치단체장은 송부 받은 신청기업 중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3.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선정

3-1.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인을 반드시 포함
 - *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심사위원 추천 요청, 전문가 중 사회적기업가는 타 지역의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위원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철저히 준수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다만, 기존 위원의 임기는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을 적용)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심의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의 당사자가 된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심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함
- 위원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심사위원회에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5급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3-2.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일정 수립)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선정이 완료되도록 심사일정 수립
- (심사방법) ‘대면회의’를 통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별지 제8호서식]
 -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 다만,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선정방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 광역자치단체장은 약정 후 채용지연, 중도탈락, 재심사 탈락 등으로 과도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심사·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인원 배정)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지원한도 인원을 감축하여 모집공고 하거나, 사업 설명회 등 사업 안내 시 임의로 지원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인원 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사전에 배정 가능한 총 인원*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기업이 신청한 인원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 * ex) 배정가능 총 인원 120명(1일 8시간 근로형태 기준)
 - * 최근 지원비율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책임성이 제고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 신청인원 감원조정 지양

3-3. 심사기준 및 배점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장은 별표 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지역특성, 해당기업의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함께 평가하여 배점
 - 신규기업과 재심사 기업을 구분하여 심사(심사 기준표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 ⑥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참여 기업보다 신규 참여기업 우선 지원
-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신규참여 기업 선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 자치단체별 심사 최저 점수기준을 정하여 기준 점수 이하 기업은 지원 받지 못하도록 운영(나누기식 지원 지양)

3-4.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 광역자치단체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기업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통보
 -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생긴 기업(신청기업에서 신청한 지원인원 변경 등) 또는 조건부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요청을 병행
 - * ‘조건부선정기업’의 보완완료 확인 등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3-5. 선정결과 보고 및 게시

- 광역자치단체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에게 보고하고,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에 입력

■ 선정결과 보고 서식 ■

[OO광역시·도]

기초 자치 단체명	신청 기업수	선정 기업수	기업명	사업자 등록 번호	고용 보험 관리 번호	기업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사업 내용	전체 근로자 수	취약 계층 근로자 수	자체 고용 유급 근로자 수***	배 정 인 원	비 고

*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자체고용유급근로자수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참여근로자 제외

4. 지원약정 체결·변경

4-1. 약정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보완을 요청한 때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과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별표 6)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12개월)으로 함
 - * 예시: 신규 사업참여기업 : '23.3.15. 약정체결 시 '23.4.1.부터 지원 시작, '24.3.31. 지원종료(지원기간 '23.4.1. ~ '24.3.31.)
 - 보완요청을 받은 기업은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지연한 때에는 총 지원기간에서 지연기간을 제외하고 지원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4-2. 사업계획 등의 변경

4-2-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 소재지 이전에 따른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은 이전하려는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접수
 - 다만, 사업참여기업의 소재지 이전이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 이전에 기존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전 전(前)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소재지 이전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함
 - 기존 소재지 자치단체 지원금 이후부터는 이전한 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간 보조금 지급기간에 대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참여기업은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의 변경으로 지정서 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정내용 또는 인증내용 변경사항이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동반하여, 이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승인할 수 있음

4-2-2. 심사 및 승인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심사 의뢰

■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접 승인

-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여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 ①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임금, 근로시간 등)
 - ② 사업내용 등을 당초 사업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변경
 - * 예시: 방과후 교실로 예체능 → 방과후 교실로 예체능과 독서지도
 - ③ 주된 사무소를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간 사전 협의)
 - * 협의 후 광역자치단체에 보고
 - ④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를 통한 승인

- 기초자치단체장은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송부

● 심사사항

①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예시: 가사간병 → 취약계층 도시락 제공 / 재활용 → 문화체험 등

② 사업수행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 예시: 법인격 등 조직형태가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로 변경되는 경우

③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된 사무소를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간 사전 협의)

④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신청 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승인 여부 등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4-2-3. 지원약정의 변경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라 지원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지원약정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지원약정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함



4-2-4. 지원인원의 조정

- (고용지원)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이 배정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서와 협조하여 참여기업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적극 참여근로자 모집 지원하여야 함
- (모니터링) 참여근로자 모집기간 3개월 후 또는 재심사 지원개시 1개월 후,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기업 배정인원 채용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배정인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추가 배정
 - * 추가배정 한도: 심사를 통해 배정받은 인원의 50%
(단, 배정인원이 1명인 경우 1명 추가배정 가능)
 -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해 배정인원이 남는 기업의 인원을 감원하여 필요한 기업에 추가 배정
 - 관내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배정인원을 추가 요청
 -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배정인원이 남는 지역의 인원을 추가수요 지역에 재배정
- (인원증원)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정인원 증원 신청 [별지 제14호서식]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원 여부 결정
- (인원감원) 모니터링 결과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고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원 할 수 있음
 - 감원조정은 배정인원 추가 수요가 있으나 예산의 여유가 없는 등 추가 배정을 위해 감원조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시
 - *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배정인원의 50%를 채용(근로개시일 기준)하지 못하여 약정해지 되는 기업에 대해 배정인원의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정인원을 감원하는 것은 불가

- 기초자치단체장은 감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원 여부 결정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내 기업의 인원을 추가·감원 조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5일 내 통보

5.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5-1 참여근로자 모집

- 사업참여기업은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서비스기관은 구인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일자리창출사업 구직등록자 중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알선하여야 함

5-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참여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종일 경우 참여 불가
- 참여 확정·승인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외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불가함

* (시간제) '24.3.15. 참여 확정·승인되어 '24.4.1. 주 20시간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작한 참여근로자가 '24.3.18.부터 '24.3.22.까지 편의점 등에서 일일 3시간씩 총 주 15시간 근로한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전일제: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에 여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민간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참여제한 근로자 판단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지원요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민간일자리 (재정지원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예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8시간 또는 6시간 참여) 등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제한	○	×	×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사회적기업 (4시간 참여) 등	참여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참여가능	○	○	○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①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 재참여 1년차는 적용제외(재참여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시에만 지원 가능)

- ②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참여기업에 취업을 한 자로써, 채용일이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
 - * (예시1) 참여예정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2024.3.1. '○○ 주식회사'에 취업하고 2024.6.30. 퇴사한 후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2024.7.1. 취업하였을 경우, '참여예정자 명단'을 2024.8.1. 제출하여 채용일(2024.7.1.)로부터 6개월 이내일지라도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바로 해당 사업참여기업에 취업한 자가 아니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 * (예시2)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이 2024.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 참여기업에 2024.4.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 (예시3)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이 2024.8.1.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자가 사업 참여기업에 2024.1.1. 취업하였다면, 채용일이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참여근로자로 전환 불가
 - *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함
- ④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⑥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사업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 광역자치단체에서 '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 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실질적 사용자·업태·인사(채용·급여지급 등)·노무관리(출퇴근 관리·업무지시·근태관리·근로계약서 작성 등)·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이윤배분 등)·모법인 여부·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 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 생상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목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 다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된 의사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별지 제9호서식]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 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5-3. 취약계층 고용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해야 함

$$\text{취약계층 고용비율} = \frac{\text{매월말일 기준 취약계층 참여근로자수(월평균)}}{\text{매월말일 기준 참여근로자수(월평균)}} \times 100$$

5-4.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 (참여예정자 명단제출)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근로개시일 3일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 참여예정자의 개인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 취약계층인 참여예정자는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 채용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참여예정자 명단은 사유발생 시 즉시 제출
- 일자리창출 사업 약정체결일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인정하되, 지원금은 승인시점부터 지원

* 만약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체결일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첫 임금지급일 전까지만 참여근로자로 승인가능하며 지원은 승인일로부터 가능

-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참여예정자 중 참여제한자 포함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별지 제11호서식]

- 다만,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 채용인원의 30%(일자리 제공형은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
 - *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1인 이상 확정·승인 가능
 - * 예시: 참여기업의 지원개시일이 3.1.이고 배정인원이 10명일 경우 5.31.까지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계없이 1명 이상 확정·승인 받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3개월이 되는 날인 5.31.이 되는 시점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아 채용하고 이때 취약계층은 채용인원의 30%(또는 50%) 이상인 2명(또는 3명) 이상이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채용을 위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예정자가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예정자에 대한 확정·승인을 거부할 수 없음
- (기존근로자 퇴사)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기업의 기존근로자(비참여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수에서 퇴사한 기존근로자수를 제외한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 다만, 퇴직한 기존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확정·승인 가능
 - 기존근로자 수는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예시: 배정인원이 10명인 사업참여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2명의 기존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8명(10명-2명)의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만 확정·승인 가능. 단, 이미 10명을 모두 확정·승인한 경우에는 추후 탈락자 발생 시 추가 승인 불가
-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방법에 따라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 * 확정·승인받은 인원의 30%(또는 일자리 제공형은 50%) 이상은 취약계층 이어야 함
- (필수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근로자를 확정·승인한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사업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 추가 확정·승인하거나 중도탈락자 발생 시에도 동일함



5-5.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사업참여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함

5-6.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7.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시 참여근로자 관리

- 사업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사업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참여근로자의 고용종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서비스기관과 협조를 통해 참여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취업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사업참여기업의 의무

6-1 참여근로자 인사·노무관리

- (서류작성, 비치 및 제출) 참여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근부, 근무 상황부, 취업규칙(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참여근로자 권리보호)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시간, 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 향상 노력
 -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하는 등 참여근로자의 고충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참여근로자의 권리 보호

● (참여근로자 능력향상) 참여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참여근로자(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의식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성취·취업희망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킬 수 있음

*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참여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1개월 이내의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

● (대체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 참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이 가능함

① 대상 : 법령상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참여근로자의 '90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이 90일 미만이라도 가능함

② 대체근로자의 채용방법 : 참여근로자의 모집·선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근로자의 범위,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해야 하며, 기존 참여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③ 대체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일자리창출사업 사업참여기업에 알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해야 함

● (공연·예술사업의 복무관리) 공연·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참여근로자가 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복무관리 기준을 정함

①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 단, 공연으로 인한 보상휴가 발생 시에만 지원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 제59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 제59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사업장 이외 장소의 근무 승인: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개별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별 사업장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계획서”에는 참여근로자별 근무장소, 근무시간, 수행업무 내용(연습과제의 과제명 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참여근로자별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변경하는 때에는 최소 1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③ 사업참여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 승인 없이 참여근로자가 개인교습, 객원연주, 출강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지원금 미지급)

※ 부정수급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연·예술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참여근로자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6-2. 회계 관리

- 근거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참여기업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서류(회계지출 증빙서류 등)를 작성하여 상시 비치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

6-3. 수입금 관리

■ 임금 등 지급 방법

-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 수령증 또는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매출액의 사용

- 사업참여기업의 매출액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
- 매출액은 아래의 경우 다른 목적보다 우선 사용하여야 함
 - ① 참여근로자 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하는 인건비
 - ② 참여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립
 - ③ 대표자 인건비, 자체고용 근로자 인건비 및 동 사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동 사업에 소요되는 관리비, 재료비 등 포함) 사업운영비 (프로젝트 개발비, 홈페이지 개발비, 홍보비 등),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투자비 (차량, 기계구입 등) 등
 - ④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 참여근로자 성과급 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지역 사회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 등
- 사업참여기업과 연계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참여기업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도 취해서는 안 됨

■ 사업종료 이후의 매출액 관리

- 매출액 사용 계획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내역(재무제표 등) 및 이익금(재무제표 상 당기 순이익)의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동 사업의 목적을 위해 매출액을 사용해야 함
- 사업을 폐지(폐업)한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에 수익금을 증여할 수 있음

6-4. 자립방안 강구

- 사업참여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나, 이와 별개로 수익발생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 자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 자문을 받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유희인력 발생 등 과다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수익모델 개발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지역에서 시장포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 역량에 비하여 지원인원이 과다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경영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는 등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6-5. 지원약정의 중도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사업장의 휴·폐업, 사업 포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접수일’에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금의 정산을 실시해야 함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약정해지 사실을 통보)

IV 주요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산정방법
적용범위
지원비율
취약계층
계속고용
지원기간

주요지원 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 일정비율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지원율+20% 인증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지원율+30%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 +3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는 제외)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21년~22년, '23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용 비교[참고]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1. 지원기간

1-1.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1-2.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함

■ 지원기간 적용방법 ■

구분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지원가능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인증이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이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일자리창출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 까지만 지원
 - * 지정기간 종료일 '23.12.14.', 지원기간 '23.7.1. ~ '24.6.30. → '23.12.14.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 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으로 산정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방비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재심사를 거쳐 당초 체결한 지원약정의 잔여기간에 대해 국비로 지원 가능

* 예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22.9.1.부터 1년간 지원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23.1.1.에 재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잔여기간(8개월) 동안 국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모법인에서 독립·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해 일자리창출사업 분리가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최대지원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2.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2-1.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 (지급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인증 '지원 비율'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 20%)
 - 인증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 30%)
-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30% 적용



2-2.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 적용(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법령 및 최저임금제도 업무지침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월 환산기준 최저임금액은 달라짐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아래 산정예시 참조)

* 하단의 산정예시는 고시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

■ 지원금 산정예시 ■

근로시간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월 209시간	1일 8시간	2,060,740	1,030,370	1,442,510	824,290	1,442,51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804,380	902,190	1,263,060	721,150	1,263,060
월 157시간	1일 6시간	1,548,020	774,010	1,083,610	619,200	1,083,610
월 131시간	1일 5시간	1,291,660	645,830	904,160	516,660	904,160
월 105시간	1일 4시간	1,035,300	517,650	724,710	414,120	724,710
월 79시간	1일 3시간	778,940	389,470	545,250	311,570	545,250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예시

- 참여근로자 결근 시 결근일수 만큼 지원금이 차감되며 결근일수와 함께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됨

- 단,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

* 계산방법 : 1인당 월 지원 금액 x 근무기간/30일(28일, 31일)

* 근무기간은 역일상의 일수로 계산(주휴 무관, 고용보험 상실일 전날까지)

[참고]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산정 시, 착오 유의

지원금 산정을 위한 월의 최저임금 산정수준 시간수 계산 방법(예시)

* 고시된 최저임금 기준

- ▶ $[(40\text{시간}(1\text{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8\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209\text{시간}$
- ▶ $[(35\text{시간}(1\text{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7\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183\text{시간}$
- ▶ $[(30\text{시간}(1\text{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6\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157\text{시간}$
- ▶ $[(25\text{시간}(1\text{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5\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131\text{시간}$
- ▶ $[(20\text{시간}(1\text{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4\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105\text{시간}$
- ▶ $[(15\text{시간}(1\text{주 중의 소정근로시간}) + 3\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79\text{시간}$
- ▶ 기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위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예시1) 주 20시간 3일 (7시간, 7시간, 6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Rightarrow [(20\text{시간}(1\text{주 중의 근로시간}) + 4\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105\text{시간}$
 ↳ 주 20시간은 1일 평균 4시간

(예시2)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 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Rightarrow (1\text{안}) [49\text{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7\text{시간}(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div 2(\text{격일}) \approx 122\text{시간}$
 ↳ $7\text{h} \times 7\text{일}$
 $\Rightarrow (2\text{안}) [24.5\text{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3.5\text{시간}(주)(주휴일)] \times 365\text{일} \div 7\text{일} \div 12\text{월} \approx 122\text{시간}$
 ↳ $7\text{h} \times 3.5\text{일}$
 $\Rightarrow 1,2\text{안 모두 가능}$

주)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임(대법원판례)

■ 산정방법 (예시) ■

20XX년 X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예시: 예비 1년차 8시간 근로자(일반)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이 포함된 3일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927,330\text{원} = 1,030,370\text{원} \times 27\text{일}(근무일수) / 30\text{일}(해당월의 일수))$ 을 지급
- * 예시: 예비 2년차 1일 6시간 근로자(일반)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포함된 4일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670,800\text{원} = 774,010\text{원} \times 26\text{일}(근무일수) / 30\text{일}(해당월의 일수))$ 을 지급
- * 예시: 예비 1년차의 1일 4시간 참여 근로자(일반)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에서 해당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원 단위 절사 지급
 $\rightarrow 517,650\text{원}(해당 월 정액금) \times 16\text{일}(근무일수) / 30\text{일}(해당월의 일수) = 276,080\text{원}$ 지급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법정휴일’은 다음과 같음

-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 ③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300인 이상 민간기업: '20.1.1.~, 30~300인 미만 기업: '21.1.1.~, 5~30인 미만 기업: '22.1.1.~)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의 범위

-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 따라서,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사항임

● 법정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 간에 약정휴일로 정하고(공휴일, 경조사, 출산 등)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어떻게 정하였느냐에 따라 휴일가산수당 적용여부가 결정
 - * 상근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개정 규정 적용기업은 제외
 -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관계없이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발생

● 다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부담’하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외해야 함

- ①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 ② 사업참여기업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 ③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
 - * 예시: 참여근로자가 18:00~03:00까지 근로한 경우(21:00~22:00 휴게), 8시간의 근로시간은 지원금 지급대상이지만, 야간근로(5시간 / 22:00~03: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

3. 지원금 신청

3-1.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 * 예산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신청 허용
-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③ 사업장 고용변동 신고서

(별지 15호, 퇴사 등 지원 근로자 고용변동 있는 경우 제출)

● (제출방법)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신청(서면 접수 불가)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일자리창출사업 매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 시스템 사용 관련 내용

▶ (기업)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하 SEIS)을 이용하여 근로자별 신청금액·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 → 구비서류 전자화 하여 첨부 →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서면 제출 불가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신청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사회적기업 인·지정 취소, 보조금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담당자) 기업의 입력내용과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지급 금액을 SEIS에 입력하여 확정

- SEIS에 매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경우에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가 발급됨. 또한, 기업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정보가 정확히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예산집행 추이, 정산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오류가 없음에도 지출 등의 증빙을 위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위변조 방지 구현

<주의!>

당월에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SEIS에 입력을 누락하여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차월에 지원금 신청 입력이 불가능함

3-2.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지원금 신청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실적보고

4-1. 지급방법

-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 (확인사항)
 -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 ② 참여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지원금 신청 해당 월)
 -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로 확인
 -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으로 확인
 -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 참여근로자 신청시 제출한 참여근로자의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으로 대체
- * 사업 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사회적기업과-2115, 2016.6.28.>
- * 지도점검 등을 위해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⑥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참여자관리' 메뉴에서 '일모아체크'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 ⑦ 사업참여기업의 임금체불 여부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참여자 관리' 메뉴에서 해당 기업 '임금체불' 정보를 통해 확인
- ⑧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 여부
 - ➔ 사업장에서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 지방관서(지역협력과)에 해당 사실 내용 즉시 통보
- (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기업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 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금액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확정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금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약정해지

- (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검토하여 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4-2. 광역자치단체 실적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를 기초자치단체에 함께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수행 실적(국고보조금 실적 한정)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로 제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령 제12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2020. 3. 3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0. 9. 29.>
 1. 3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V 사업참여기업 재심사

1.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 (공모 안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 90일전 부터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 *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확인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고문을 발송
- (접수기간) 재심사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일정, 재심사 일정 등을 고려 하여 15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음. 다만,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2. 재심사 대상

2-1. 재심사 참여자격

- 이 지침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년차 지원기간이 '22.6.1. ~ '23.5.31.이고 재심사 접수마감일이 '23.6.12.인 경우, 최대지원기간 '23.5.31. 이전인 '23.5.30.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 참여 가능
- * 예시2: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년차 지원기간이 '22.6.1. ~ '23.5.31.이고 재심사 접수마감일이 '23.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을 하고, 접수마감일 이후 인증신청('23.5.27.)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사 참여 가능
- * 예시3: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년차 지원기간이 '22.6.1. ~ '23.5.31.이고 재심사 접수마감일이 '23.5.22.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접수마감일 이후 최대지원기간 지나서 인증신청('23.6.1.)을 하였을 경우에는 참여 불가

지원기간	[Timeline bar with yellow and grey segments]							
일 자	'20. 6.1.	'23. 5.20.	5.22.	5.27.	5.30.	'23. 5.31.	6.1.	6.12.
예 시	지정 기간 개시일	인증 신청일 (예2: ○)	접수 마감일 (예2, 3)	인증 신청일 (예2: ○)	지정기간 (3년) 종료일	인증 신청일 (예3: ×)	접수 마감일 (예1)	

2-2.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 1-2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②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지원금신청관리’ 메뉴에서 해당 기업 ‘임금체불’ 정보를 통해 확인

* 등록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되었으나, 임금청산이 되었거나 범위반 사실없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

③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기업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

3. 재심사 신청

3-1. 재심사 안내

●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계속지원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심사 일정을 확정

* 예시: 재심사 대상 기업A의 지원기간이 '22.8.1. ~ '23.7.31.인 경우 '23.4.15.에 재심사 공고, '23.4.30. 신청·접수를 마감하여 '23.6.30.까지 심사·선정, '23.7.10. 선정결과 보고·게시, '23.7.20.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재심사 대상 기업B의 참여기간이 '22.10.1. ~ '23.9.30.일 경우 기업A의 재심사 기간에 함께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재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사업참여기업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심사 일정 및 절차, 신청서 및 준비서류, 접수처 등을 공문 등으로 안내

3-2. 재심사 신청 및 접수

●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 [별지 제2호의2서식]

● 신청기업의 소재지 관할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업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명기한 후 즉시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이송하고, 해당 신청 기업에 이송사실을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기초자치단체장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유급근로자 명부
-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확인사항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용)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임금대장
- 사업보고서

3-3 참여자격 등 확인·조회 및 통보

- 「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 2-4. 참여자격 등 확인·조회 및 통보」의 내용

3-4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

- 「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 2-5.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송부」의 내용 준용
 - *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별지 제7호의2서식]

4. 재심사 및 선정

- 본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심사·선정 절차 및 방법과 심사기준은 「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신규)」의 내용 준용

4-1.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및 배점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장은 별표 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지역특성, 해당기업의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함께 평가하여 배점
- 자치단체별 심사 최저 점수기준을 정하여 기준 점수 이하 기업은 지원 받지 못하도록 운영(나누기식 지원 지양)

4-2. 지원인원 조정

- (계속지원인원)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심사일 현재' 참여인원을 계속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중 청년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초과배정 가능 함



- (지원인원 감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 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 감원된 경우에도 총 지원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5. 지원약정 체결·변경

- 「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 4. 지원약정 체결·변경」의 내용 준용
-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의 지원개시일은 직전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함
 - 약정체결이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 소급하여 체결

- ▶ 지원기간 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새로 약정을 체결
- ▶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일 익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기산하여 새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사회적기업과-4243, 2012.12.14.)

- 자치단체에서 근로자 채용 지연 및 특별한 사정 발생 등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약정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상황 및 재심사 제외 사유 등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가능 여부 검토 및 결정
- * 단,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4년 9월을 도과할 수 없음

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지원목적)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추가하여 지역상황을 고려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육성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발굴·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 ①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기준, 선정 심사기준 완화 등 심사기준 일부 조정

* 심사기준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도 지역 자율사업이 허용하는 범위(지역별 배정예산의 20%) 내에서 가능

- ▶ 지역특화사업으로 컨소시엄사업 등을 지원하고 차년도에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게 할 경우 기존 채용한 근로자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참여기준 조정
- ▶ 학교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형의 취약계층 의무고용률 완화(50% → 20%)
- ▶ 신중년일자리사업 등 정부지원형 비수익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기간을 정해 수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종료로 퇴사할지라도 배정인원 계산시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설정 등

- ② 지역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해 지침상의 지원율에 대한 조정

- ▶ 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고 싶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현행 20%추가 지원율을 30% 등으로 상향 조정
- ▶ 지역에 결혼 이주여성이 많을 경우 이에 특화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지원율 10% 상향 지원
- ▶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등 취업애로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제공 인력 및 극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율 10% 상향 지원



③ 지역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 지원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에 대해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고 비율도 자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음
-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 아동에게 방과후 학교, 급식, 귀가 등 서비스 추진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 ▶ 지역의 청소·경비 등 용역업종의 경영악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참여근로자 추가 지원

● (예산한도) 당해연도 고용부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예산의 20%, 자치단체 당해 배정 사업예산의 20%

- * 고용부 승인이 있을 경우 특정 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 지역자율 예산한도 20%를 초과하여 사용가능(당해연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2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지원방법) 광역자치체는 매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지침 시달 후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으로 대체 가능, 자치단체별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 * 필요에 따라 해당 사안 발생시 추가 계획을 수립 및 시행도 가능 (예산 집행추이를 확인하여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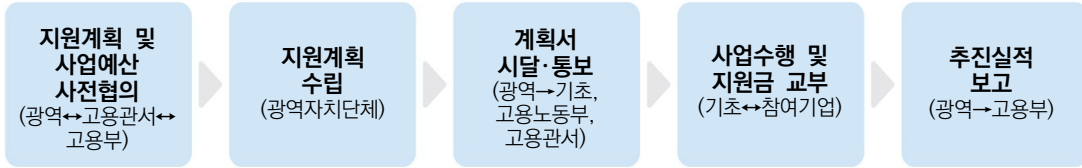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는 교부된 사업예산의 최대 20%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지원계획 수립 전에 구체적 내용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내용이 타당한지, 예산이 20% 범위 내인지 등을 확인

-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과정에서 필요시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 가능

- 계획은 당해연도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 공고 전까지 수립(불가피할 경우 사업 시행전까지 수립 가능) →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로 제출, 추진실적은 다음 연도 2.15까지 본부에 결과 보고 [별지 제16호서식]

- * 지원계획은 지원항목별 예산 내역 등을 명시하여 수립, 당초 수립한 계획은 사정변경 등을 명시하여 변경 가능

■ 지역 자율 사업 추진 절차 ■



- (지원대상)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 지원
- (지원기간) 당해 회계연도 내 지원(약정기간과 다를 경우 유의, 해당기업에 안내)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요약

- ▶ (지원목적) 사회적기업 일자리 발굴·육성 및 일자리 안정적 정착
- ▶ (지원방법)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 ▶ (지원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
- ▶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지원율, 취약계층 고용률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
- ▶ (예상한도) 당해 사업예산의 20%
- ▶ (지원기간) 당해 회계연도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21~'23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내용 [참고] ■

'21년~'22년 약정기업		'23년 이후 약정기업
'최저임금 수준 임금'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임금'
최저임금 수준 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의 일정비율	지원금 산정방법	최저임금 일정비율
지원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지원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지원비율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지원율 + 20% -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지원율 + 30%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지역 자율사업으로 규정 해야 하는 내용 - 계속고용 등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및 비율	계속고용	○ 지역 자율사업으로 규정 해야 하는 내용 - 계속고용 등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및 비율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 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 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60%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 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 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 (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5 (신규)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출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기업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재심사)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35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자율경영 공시 여부 (가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별표 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OOO기업’(이하 “사업참여기업”)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연차, 지원비율)

* 다만,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인원: 명(취약계층 ____%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목표매출액: 원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참여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사업참여기업”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참여기업”의 소재지 및 “사업참여기업”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참여근로자의 임금 용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참여근로자 1인당 월 약정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서면 근로계약서에 사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

③ “사업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업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⑤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는 지원 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약정한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⑦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중지일부부터 약정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된다.



⑧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미지급) ①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 이후에 “사업수행기관”이 배정한 참여근로자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또는 지원기간 종료일 이후 참여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예정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중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사업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발전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한 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이 발생한 경우
4.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9조(보고의무)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수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사업참여기업”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참여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근로조건 상향,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적립 등)에 우선 사용한 후 근로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 당해 사업의 유지·확대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으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금은 아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만큼의 기간 동안은 같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2. 동 일자리 사업유지를 위해 당해 사업 참여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지속 하는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단체에 기부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참여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참여기업”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조치) ① “사업참여기업”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사업참여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이 제2항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근로자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사업 참여기업”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사업참여기업”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⑧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3조(약정의 변경)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사업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4조(약정해지) ①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6.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7.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8.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 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1.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업참여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사업참여기업”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립방안 강구)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인증 1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인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중견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지원 ~
		전문인력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회보험료지원 ~	
□ 중복지원 여부					
구분	부처(차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		
사업내용	명	명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④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ID 제출)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추후 교육 과정 변동 가능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 2)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인증 1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②[], ③[], ④[])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비율(B/A) %		
종전 재정 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지원 ~	
		전문인력지원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회보험료지원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임금체불 여부						
구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뒷쪽)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유급근로자 명부
 -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 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 2)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7) 사업성과 작성방법
 -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제2쪽)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⁵⁾			
총 지원기간 ⁶⁾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년 월
지원시점기준 ⁷⁾	전체 근로자수 (㉑+㉒)	자체 고용근로자 수 ㉓	참여근로자 수 ㉔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 ⁸⁾	전체 근로자수 ㉑	취약계층 수 ㉕	취약계층 비율 (㉕/㉑)
	명	명	%
사업성과 ⁹⁾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㉖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㉗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㉗/㉖)
	명	명	%
사업명			
사업분야 ¹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p>❖ 구비서류:</p> <p>〈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추후 교육 과정 변동 가능) <p>〈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p>❖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p>❖ 작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지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p>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p> <p>- 산출근거</p> <p>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p> <p>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품분류</th> <th>평균단가</th> <th>산출근거</th> <th>연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문구류</td> <td>2,000원</td> <td>2,000X5,000개X12개월</td> <td>120,000,000원</td> </tr> <tr> <td>의류</td> <td>30,000원</td> <td>30,000X500개X12개월</td> <td>180,000,000원</td> </tr> <tr> <td>전자제품 액세서리 류</td> <td>50,000원</td> <td>5,000X2,000개X12개월</td> <td>120,000,000원</td> </tr> </tbody> </table>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 (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input type="checkbox"/>] 변경[<input type="checkbox"/>]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input type="checkbox"/>] 혼합형[<input type="checkbox"/>] 기타형[<input type="checkbox"/>]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input type="checkbox"/>] 「민법」에 따른 조합[<input type="checkbox"/>] 「상법」에 따른 회사[<input type="checkbox"/>]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input type="checkbox"/>] 농(어)업회사법인[<input type="checkbox"/>] 영농(어)조합법인[<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원			
	사회서비스 제공				원			
	근로자 처우개선				원			
	지역사회 재투자				원			
	기타()				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원		
		전문인력지원				원		
		사업개발비				원		
		사회보험료				원		
		정책자금				원		
		기타				원		
	소계				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원		
		모기관 지원				원		
		일반 기부				원		
		민간 금융지원				원		
		기타				원		
		소계				원		

210mm×297mm(백상지 80g/㎡)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원	공공시장	원			
			민간시장	원			
	매출총이익	원	매출원가	원			
	영업이익	원	판매비와 관리비	원			
	영업외수익	원	노무비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원	영업외 비용	원			
	당기순이익	원	법인세등	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산림[]	보건[] 고용[]	사회복지[] 청소[]	보육[] 문화·예술[]	환경[] 관광·운동[]	간병·가사 지원[] 문화제[]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원	원	원	원	
2.		원	원	원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 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0)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〇〇%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〇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업종 매출액 분포의 〇〇%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사회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〇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 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OO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OO으로 다소 낮아 OO명 정도 지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OO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산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기업혁신(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어떤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어떤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 졌고 생산판매 등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매출을 향상하려고 하였고 특히 현재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존재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00.00.00.)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기간 (00.00.00 ~ 00.00.00) 형사고발 여부(○, ×)

4. 검토 의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호서식]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의견서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사업내용			

2.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 가치 (15)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〇〇%
고용성과 (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〇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〇〇%
자율경영 공시 (가점, 5)		• 자율경영 공시 함(안함)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적가치 (2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함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적 일자리 창출 구성원 성과급 등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기업의 질적 노력이 우수함 • 기부, 00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에 사용함
고용성과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은 지역사회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사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향후 사업성장 가능성이 높음 • 00기업에게 주기적 물량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유지 가능성 및 일자리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향후 고용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됨 / 연간매출액이 00으로 다소 낮아 00명 정도 지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25)	사업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특화된 모델로 지속적 발전할 경우 지역사회에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됨 • 00기업은 친환경 상품제작, 지역사회 생상품 조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이 우수함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참여기간	지원금액	제재처분 내용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00.00.00.)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기간 (00.00.00 ~ 00.00.00) 형사고발 여부(○, ×)

4. 검토 의견

○ 신청기업의 장단점 분석,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지속적 발전 가능성(또는 지원 종료 후 계속 고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종전 사업수행시 제재처분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기재(지원인원 조정 의견 등 포함)

* 사회적기업은 지원종료 후 자립가능성과 지속고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인원 의견 제시

년 월 일

검토 기관장(기초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2.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사업내용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정신정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공고일 기준 기존근로자 (비참여 근로자) 수	명	현재 기존근로자 (비참여 근로자) 수	명		
배정인원수	명	취약계층고용 계획비율	%		
참여예정자수	명	참여예정자 중 취약계층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계획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참여기간	취약계층 분류번호	휴대폰	비고
1	김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5		
2	이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12-5		
3	홍길동			1		
4						
5						
6						
7						
8						
9						
10						
11						
12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질환(질병관리본부 후천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보호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자)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1호서식]

〇〇시

수신자 (재)〇〇〇〇

(경유)

제목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취약계층 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속 지원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〇〇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일반인
〇〇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고령자)
〇〇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취약계층(일반인)

끝.

〇〇시장 (인)

주무관 〇〇〇

〇〇〇 팀장 〇〇〇

〇〇〇 과장 〇〇〇

협조자 시행 〇〇〇 접수

우 전화 전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년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사업내용			

2.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로 중복지원된 경우 부정수급 처리 가능)

3.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전월 지원금 수령액 (A)	전월 지원금 집행액 (B)	전월 지원금 잔액(C=A-B)	당월 지원금 산정액(D)	당월 지원금 신청액 (E=D-C)
지원금 신청액(E)			원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추진실적 보고서 (해당 약정서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마지막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산정방법 작성 예시

● 산정 예시

20XX년 X월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100%	예비		인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70%
	1	2	3	4	5	6	월 209시간 1일 8시간	2,060,740	1,030,370	1,442,510	824,290	1,442,510
7	8	9	10	11	12	13	월 183시간 1일 7시간	1,804,380	902,190	1,263,060	721,150	1,263,060
14	15	16	17	18	19	20	월 157시간 1일 6시간	1,548,020	774,010	1,083,610	619,200	1,083,610
21	22	23	24	25	26	27	월 131시간 1일 5시간	1,291,660	645,830	904,160	516,660	904,160
28	29	30					월 105시간 1일 4시간	1,035,300	517,650	724,710	414,120	724,710
							월 79시간 1일 3시간	778,940	389,470	545,250	311,570	545,250

* 예시)

- * 근로자1. 예비 1년차 8시간 근로자(일반)의 경우, 8일, 9일 결근 시 해당주의 주휴일(14일)이 포함된 3일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927,330원 = 1,030,370원 × 27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을 지급
- * 근로자2. 예비 2년차 1일 6시간 근로자(일반)의 경우, 10일 16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일(14일 21일이 포함된 4일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670,800원 = 774,010원 × 2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을 지급
- * 근로자3. 예비 1년차의 1일 4시간 참여 근로자(일반)가 16일 퇴직한 경우, 해당 연차 월 정액금에서 해당 월 근무일수 비례 금액을 산정하여 월 단위 절사 지급
 → 517,650원(해당 월 정액금) × 16일(근무일수) / 30일(해당월의 일수) = 276,080원 지급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기업명: (주)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단위: 일, 시간, 원]

참여자 성명	생년 월일	참여시작일 (중도탈락일)	공제 일수* (a)	해당월 일수** (b)	지원금(c) = {(해당 월 일수(b) - 공제일수(a)) ÷ 해당 월 일수(b)} (원단위 절사)	임금 지급액
근로자1		20XX.XX.01	3	30	948,260	*,***,***
근로자2		20XX.XX.01	4	30	681,580	*,***,***
근로자3		20XX.XX.16	15	30	279,620	*,***,***
지원금 합계(C)					1,909,460	
<당월 지원금액 산정>						
당월 지원금 산정액			지원금 합계(C)		1,909,460원	

- * 공제일수: 결근, 유급휴일로 명시되지 않은 휴일
(결근일 경우 결근일 이외에 결근일이 포함된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
- ** 1월의 경우: 31, 2월의 경우: 28~29, 3월의 경우: 31, 4월의 경우: 30...
-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역일상 일수로 계산(주휴무관)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3호서식]

(제1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기업 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소재지		대표자	
실적보고서 작성 책임자	(인)	연락처	
■ 사업 개요			
사업내용①			
지원연차②	<input type="checkbox"/> 예비1년, <input type="checkbox"/> 예비2년, <input type="checkbox"/> 인증1년, <input type="checkbox"/> 인증2년, <input type="checkbox"/> 인증3년		
사업기간③			
배정인원④	명	참여근로자 인원 ⑤	명
목표매출액⑥			
■ 수입 내역(사업기간)			
구분	금액	사업계획대비 비율	총수입대비 비율
계			
정부지원금⑦			
기업지원금⑧			
민간기부/후원/회비⑨			
영업수익(매출액)⑩			

(제2쪽)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취약계층)					
근로자명 ^①	참여시작일 ^②	중도탈락일 ^③	중도탈락사유 ^④	월 평균임금 ^⑤	취약계층 유형 ^⑥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해당 약정기간 중 취약계층으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참여근로자 지원 내역(일반근로자)					
근로자명 ^①	참여시작일 ^②	중도탈락일 ^③	중도탈락사유 ^④	월 평균임금 ^⑤	비고
				원	
				원	
				원	
				원	

* 참여근로자 중 해당 약정기간 중 일반근로자로 승인받고 지원받은 모든 근로자 내역 작성

■ 이익금 잔액					
(단위: 원)					
사업기간	수입액	지출액	잔액	사용계획	비고

(종료단체만 해당)

- * 잔액은 사업종료일 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 가능
- * 사업종료 전월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향후 참여자 관리계획



(제3쪽)

■ 기타 특이사항 (향후 계획 등)

Blank area for reporting other special matters or future plans.

■ 지원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실적

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기재

② 실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③ 참여자 교육 실적 등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4쪽)

❖ 작성방법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마지막달 지원금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①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 작성
- ②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 작성
- ③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 작성
- ④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배정받은 인원 작성
- ⑤ 배정받은 인원 중 해당 지원약정 종료일 기준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아 고용중인 인원 작성
ex) 배정인원 5명 중 3명을 참여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명이 중도탈락하였을 경우 승인받은 인원은 2명
- ⑥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상 목표 매출액 작성
- ⑦ 해당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지원금액 작성
- ⑧ 해당 지원기간 동안 모법인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작성
- ⑨ 해당 지원기간 동안 민간 후원금, 회비 등이 있을 경우 작성
- ⑩ 해당 지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작성
- ⑪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 이름 작성
- ⑫ 참여근로자의 해당약정 기간 중 참여시작일
- ⑬ 참여근로자가 해당 약정기간 중 중도탈락한 날(고용보험상 상실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 ⑭ 참여근로자가 중도탈락한 사유 작성
ex) 자진퇴사, 타 사업장 이직, 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자체고용자로 전환 등
- ⑮ 참여근로자 월 임금 평균 금액작성
- ⑯ 참여근로자로 승인받은 취약계층 유형 작성
ex)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장기실직자 등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4호서식]

배정인원 증원 신청서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원약정기간 부터 까지	총 근로자 수	명
연 락 처	Tel. (Fax.)	담 당 자	성명 : (e-mail :)
◆ 변경신청 내용			
배정 인원		배정 인원 중 고용된 인원	명
증원사유	* 필요시 별지작성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 배정인원 증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5호서식]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기업 고용변동 신고서							
기업유형 (약정서 기준)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형)						
◆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예비 지원연차 (약정서 기준)				지원기간		0000-00-00~ 0000-00-00	
지원근로자 (배정인원)	0명 (0명)			지원 일반근로자		0명	
				지원 취약계층근로자		0명	
연락처 (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 고용변동 내용(필요 시 별지 작성)							
성명	생년월일 (00-00-00)	성별 (남/여)	근로자 유형 (일반/취약)	취약계층 분류번호 (해당 시)	입사일 (0000-00-00)	퇴사(예정)일 (0000-00-00)	퇴사사유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기업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관서, 관할 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6호서식]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결과 보고서

자치단체명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예산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집행액	총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사업추진 적정여부	사업계획 이행				
	예산 및 회계집행				
	기타사항				
사업 성과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위주(수치화)로 기재			
최종 평가 의견		사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정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 산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휴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4]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휴유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❶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❷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①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②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휴유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유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전부 산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5]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

원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0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text{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frac{\text{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text{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의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추러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기본급</td><td style="text-align: right;">1,587,000원</td></tr> <tr><td>직무수당</td><td style="text-align: right;">130,000원</td></tr> <tr><td>교통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원</td></tr> <tr><td>식대</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원</td></tr> <tr><td>시간외수당</td><td style="text-align: right;">260,000원</td></tr> <tr><td>상여금</td><td style="text-align: right;">132,250원</td></tr> <tr><td>계</td><td style="text-align: right;">2,309,250원</td></tr> </table> <p style="font-size: 8px; margin-top: 5px;">※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p>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계	2,309,250원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기본급</td><td style="text-align: right;">1,587,000원</td></tr> <tr><td>직무수당</td><td style="text-align: right;">130,000원</td></tr> <tr><td>교통비</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원</td></tr> <tr><td>식대</td><td style="text-align: right;">100,000원</td></tr> <tr><td>상여금</td><td style="text-align: right;">132,250원</td></tr> <tr><td>계</td><td style="text-align: right;">2,049,250원</td></tr> </table> <p style="font-size: 8px; margin-top: 5px;">※ 식대·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p>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132,250원	계	2,049,250원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p> <div style="border: 1px solid #0056b3;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6f2ff; margin: 5px 0;">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9,805원(2,049,250원 ÷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p> </div>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260,000원																											
상여금	132,250원																											
계	2,309,250원																											
기본급	1,587,000원																											
직무수당	13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132,250원																											
계	2,049,250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2. 최저임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법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①+③)
--------------	---	---------------------	---	----------------------------

구 분		산입여부
매 월 지 급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	미산입
	ⓐ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기타 ⓐ,ⓑ,ⓒ에 준하는 임금 * 예: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②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전부산입	
ⓐ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③ 생활보조·복리후생성 임금	미산입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통화로 지급	전부산입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미산입

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임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의미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통상임금 요건		최저임금 산입 임금
소정근로 대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한 임금은 제외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미산입
일률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려 안함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	고려 안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참고 6]

감시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법

2018년 시간급
7,530원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



- +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을 말하고,
- + **단속(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 전용 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형태별 임금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아파트의 형태에 맞는 근로형태와 임금체계의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형태별 임금 지급의 기준시간 및 임금액

근로형태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 부여 기준			점심, 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부여 기준			
	격일제(Ⅰ형)	1일 2교대제(Ⅱ형)		격일제(Ⅲ형)	1일 2교대제(Ⅳ형)		
근무시간대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7시	7시~익일7시	7시~19시	19시~익일7시	
휴게시간	점심	1	1	-	1	1	-
	저녁	1	-	1	1	-	1
야간휴게시간(-)	3	-	3	4	-	4	
실근로시간	19	11	8	18	11	7	
야간근무가산시간(+) ¹⁾	2.5	-	2.5	2	-	2	
임금지급기준시간(A)	21.5	11	10.5	20	11	9	
예1) 시급이 7,530원인 경우	일 임금액(B) ²⁾	161,895	82,830	79,065	150,600	82,830	67,770
	월 임금액(C)	2,462,153 (B×365/2/12)	2,519,413 (B×365/12)	2,404,894 (B×365/12)	2,290,375 (B×365/2/12)	2,519,413 (B×365/12)	2,061,338 (B×365/12)
예2) 시급이 7,800원인 경우	일 임금액(B) ²⁾	167,700	85,800	81,900	156,000	85,800	70,200
	월 임금액(C)	2,550,438 (B×365/2/12)	2,609,750 (B×365/12)	2,491,125 (B×365/12)	2,372,500 (B×365/2/12)	2,609,750 (B×365/12)	2,135,250 (B×365/12)
예3) 시급이 8,000원인 경우	일 임금액(B) ²⁾	172,000	88,000	84,000	160,000	88,000	72,000
	월 임금액(C)	2,615,833 (B×365/2/12)	2,676,667 (B×365/12)	2,555,000 (B×365/12)	2,433,333 (B×365/2/12)	2,676,667 (B×365/12)	2,190,000 (B×365/12)

¹⁾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²⁾ 일 임금액(최저임금 기준) = 임금지급 기준시간(A) × 약정 시급액(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휴게(휴식)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Part 03

I. 총 칙	
1. 목 적	152
2. 사업개요	153
3. 추진근거	153
II.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154
2. 운영주체별 역할	155
III.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1. 지원대상	157
2. 선정절차	159
3.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162
IV. 주요 사업내용	
1. 지원내용	168
2. 지원금 신청 및 관리	172
3. 지원금 지급방법 및 관리	173



I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 전문인력이 (예비)사회적기업 내부의 전문가로서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경영컨설팅을 follow-up하여 컨설팅 효과를 제고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

전문인력의 범위

- ▶ 「전문인력」은 [별표 2]와 같다
 - 위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등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지원 가능
- ▶ 전문인력 확인방법
 - 전문인력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를 의미
 - 〈경력요건〉
 - 전문인력 경력은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및 사용·경력증명서 확인 원칙
 - 단, 문화예술, 교육, 요식업 분야 종사자, 사업주(대표자) 등 고용보험적용 제외 대상자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경력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용역계약서, 실적증명서, 공연포스터·리플릿 등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 〈자격요건〉
 - 국가자격증,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 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력요건〉
 - 석·박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 ▶ 전문인력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약정서에 명시된 주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부수적인 업무의 수행도 일부 허용됨
 - 다만, 부수적인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 약정 해지됨

2. 사업개요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12.10.15.일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대상을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차등 지원됨

3.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II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2. 운영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 본 부

-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별 예산배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사업수행결과 평가 등 총괄 조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문인력 취업지원(상담, 알선)
- 참여기업 지도·점검 등 사업운영 지원

2-2.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연간 전문인력지원 계획 공고(일정, 규모 등)
- 전문인력 사업참여기업 공모
- 기초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재교부
- 기초자치단체 지원 및 지도점검 총괄
- 전문인력 사업수행결과 고용노동부 보고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기초자치단체

- 지역별 제도안내 등 홍보
- 전문인력지원 신청 접수 및 검토
- 전문인력 필요성 등 지원여부 심사·선정
- 전문인력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취업지원(상담, 알선 및 승인)
 - *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
- 전문인력 참여기업 지원
- 지원금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
- 전문인력지원 지도 점검
- 전문인력사업 사업수행결과 광역자치단체 보고

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문인력 지원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구축·운영
-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Ⅲ

사업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근로자 선발

1. 지원대상

1-1.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1-2.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예시: '23.4.10.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사회적기업이, '23.4.7.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인력 참여 제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확인절차

□ 고용조정 이력

○ 재정지원관리 > 전문인력지원 사업관리 > 전문인력지원 접수·심사

신청기업명	접수일	사업장관리번호	검토보고서 작성일	제출여부	장애인공단 지원여부
	2016-11-14 15:01	38587003290	검토보고서 등록		

고용조정이력 ①

●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회

1.기본정보 (조회일 : 2016-11-21)

조회결과 상한영농조합법인 기업으로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2.고용보험상실사유정보

번호	상실월	상실지수	상실사유	상실사유코드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 고용조정이력을 확인한 이력을 저장하시려면 고용조정이력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고용조정이력저장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 조회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검토보고서	고용보험조회이력정보
				③

고용보험조회 이력정보 출력 ④

고용보험조회 이력정보

조회자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	조회일	2016-11-18
조회기간			

번호	조회일	사업명명	제출여부	상실월	상실지수	상실사유	상실사유코드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으로 조회한 이력이 없습니다.							

- 1) 해당 기업의 고용조정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조정 이력정보 조회
- 2) 고용조정이력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이력을 저장
- 3) 고용보험조회이력정보 탭에서 이력 확인
- 4) 고용보험조회이력정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이력 출력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자격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선정절차

※ '24년 신규 공모는 운영하지 않음[지침 내 관련 내용 등은 참조용]

2-1. 모집 방법

- (공개모집)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인력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연간사업 계획을 매년 1월 중에 공고(권고사항)

- 공고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제시(권고사항)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련기업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관련 게시판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확인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고문을 발송



-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모 전 기초자치단체별 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필요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일반인력 예산과 전문인력 예산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접수기간)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2.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서면접수 불가)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2-3. 심사·재심사

- (심사) 기초자치단체는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선정여부 결정
- ① 지원 필요성, 사용분야 및 인원의 적절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심사·결정
-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가능
- (재심사) 지원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한 재심사
- 이미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12개월) 만료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해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90일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계속지원을 신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참여기업에서 재심사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로 신청 하도록 하며 지원 종료 이후 고용유지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 동 심사를 통한 지원 승계 가능
- 기초자치단체장은 위 심사절차에 따라 지원 인원의 효과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

2-4. 심사결과 통지 및 보완

-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의 일부내용 보완 등을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원결정 내용이 당초 제출한 활용계획서와 다를 경우 신청기업은 지원 결정 내용대로 활용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5일 이내)

2-5.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지원사업 선정 즉시 (예비)사회적기업에 통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별표 1)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12개월)으로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필요한 사항을 지원약정서에 추가할 수 있음
- 자치단체에서 근로자 채용 지연 및 특별한 사정 발생 등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약정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상황 및 재심사 제외 사유 등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계속 지원가능 여부 검토 및 결정

* 단, 최대지원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4년 9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참여근로자 모집·선발

3-1. 모 집

- 사업참여기업은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을 받을 수 있음

3-2.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 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채용, 급여지급 등), 노무관리(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 이윤 배분 등), 모법인 여부, 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 생상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목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 가능
-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 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 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 '재택근무' 또는 '타사업 겸업' 등은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에 전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지원 부적정

3-3. 확정·승인

-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근로개시일 3일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 및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 * 참여예정자의 개인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 전문인력 지원 약정체결일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인정하되, 지원금은 승인시점부터 지원

-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한 때에는 참여예정자가 전문인력 기준* 및 참여제한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별지 제7호의3서식]

- * 전문인력 채용시 경력요건·자격요건·학력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약정을 해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신청

- * 예시: 전문인력 지원약정을 '23.4.1. ~ '24.3.31.까지 체결하고, '23.6.20. 전문인력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3.7.5.부터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근로개시일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 해지



- 사업참여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예시: 전문인력 지원약정을 '23.4.1.~'24.3.31.까지 체결하고, '23.4.15. 전문인력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3.5.1.부터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 지원금은 '23.5.1.~'24.3.31.까지 지원

3-4. 광역자치단체 실적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를 기초자치단체에 함께 제출 [별지 제5호서식]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수행 실적을 제출받아 익년도 1월까지 고용노동부 본부로 제출

3-5. 전문인력의 이직과 대체채용

- 지원기간 내에 근로자본인의 사정에 의해 전문인력이 이직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계속 지원받고자 할 경우 절차 및 지원기간

① 당초 승인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채용될 자가 전문인력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채용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으로 함

* 예시: 지원기간이 '23.1.1.부터 '23.12.31.까지인 전문인력이 '23.1.10. 입사, '23.4.30. 퇴직, 대체 전문인력이 '23.6.1. 채용된 경우 대체 전문인력의 지원기간은 '23.6.1.부터 '23.12.31.까지임

-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지원기간도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으로 함

* 예시: 지원기간이 '23.1.1.부터 '23.12.31.까지인 전문인력이 '23.1.10. 입사, '23.4.30. 퇴직, 이후 3개월간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이후 재신청 승인으로 전문인력을 '23.9.1. 채용한 경우 전문인력의 지원기간은 '23.9.1.부터 '23.12.31.까지임

② 당초 승인받은 분야 이외의 분야에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

- 기존의 약정은 해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새로이 신청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성,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기간은 기존약정 종료기간까지만 지원하며, 기존 분야의 잔여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승계함

*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 경영 (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 (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으로 판단

● 사업 참여중인 전문인력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장기간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전문인력 대체근로자 채용 관련

- ① 참여근로자가 관계 법령상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가·휴직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참여근로자 대체 채용 가능
- ② 유산·사산휴가의 경우는 90일 미만인 경우라도 참여근로자 대체 채용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참조)
- ③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참여근로자의 휴직·휴가 기간 동안으로 한정
- ④ 참여근로자를 대체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대상 범위 및 참여자격 제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함
- ⑤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는 기존 참여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 수행
- ⑥ 대체 채용된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다른 참여단체에 알선, 실업급여 수급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 노력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IV 주요 사업내용

1. 지원내용

1-1.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 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전문인력 지원금 월 250만원 한도 상향은 '23년 약정체결 기업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 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고정OT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이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 지급 예시 (250만원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예시	1년차 (10%)	2년차 (20%)	설명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통상임금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25만원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10%인 25만원 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25만원을 뺀 225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2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50만원을 뺀 200만원 지급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50만원	2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10%인 30만원 이나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50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2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60만원을 뺀 240만원 지급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통상임금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50만원	2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년차 모두 급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을 뺀 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50만원을 지급

■ 지급 예시(250만원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

예시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설명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통상임금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	175만원	12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50만원 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자부담을 뺀 200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75만원을 뺀 175만원 지급 • 3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5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25만원을 뺀 125만원을 지급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통상임금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40만원	210만원	1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60만원 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자부담을 뺀 240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90만원을 뺀 210만원 지급 • 3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5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50만원을 뺀 150만원 지급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급여로 통상임금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50만원	245만원	17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자부담은 급여의 20%인 70만원 이나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50만원 지급 • 2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3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05만원을 뺀 245만원 지급 • 3년차의 경우 자부담률이 급여의 50%이므로 지원금은 월 급여에서 175만원을 뺀 175만원 지급

재정 지원 일반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부정수급

재정 지원 세부 조치



1-2.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 동일 분야 전문인력 추가 신청시 기존 지원에 대한 변경신청서(별지 1 전문인력지원 신청서 활용)를 제출받아 검토·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할 것임
 - ex) 기획분야 전문인력으로 참여중인 근로자가 영업분야의 자격요건도 갖추고 있다면, 기획분야 최대지원기간이 도과한 후 영업분야 참여 가능(단, 지원가능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원기간 적용방법 ■

구분	전문인력
지원가능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지정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24.7.1., 지원기간 '23.7.1. ~ '24.8.31. → '24.7.1.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 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까지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기간으로 산정

■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 예시

- (예비사회적기업) 영업·IT분야 지정기간 내 각 2년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영업·IT·교육·법무분야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간 각 3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예시 ■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예비 3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인증 4년차	인증 5년차	인증 6년차	인증 7년차
영업분야 (자부담)	○ (10%)	○ (20%)		-	● (20%)	○ (30%)	● (50%)			-
IT분야 (자부담)		○ (10%)	○ (20%)	-		● (20%)		○ (30%)	● (50%)	-
교육분야 (자부담)	-	-	-	-	● (20%)			○ (30%)	● (50%)	-
법무분야 (자부담)	-	-	-	-		● (20%)	○ (30%)		● (50%)	-

* ○: 지원받은 연도 ●: 인증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 ●: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지원기간 종료일



2. 지원금 신청 및 관리

2-1.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별지 제9호서식]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사업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에 지원근로자의 월별 업무일지 제출을 별도 요청할 수 있음

② 사업장 고용변동 신고서

(별지 3호, 퇴사 등 지원 근로자 고용변동 있는 경우 제출)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면접수 불가)

- 자치단체는 심사 등 전 과정을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확인사항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2-2. 중도탈락자 관리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참여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지원금 지급방법 및 관리

3-1. 지급방법

-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원금은 사업참여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 (확인사항)
 -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 ② 참여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지원금 신청 해당 월)
 -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로 확인



-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로 확인
-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 참여근로자 신청시 제출한 참여근로자의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으로 대체
 - * 사업 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사업자 등록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 * 지도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⑥ 사업참여기업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참여자관리’ 메뉴에서 ‘일모아체크’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 ⑦ 사업참여기업의 임금체불 여부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참여자 관리’ 메뉴에서 해당 기업 ‘임금체불’ 정보를 통해 확인
 - *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이 확인된 경우나 4대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즉시 체불임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청산 시까지 “지원금 지급보류”
 - ** 재정지원 기간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시 제외 조치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되었으나, 임금청산이 되었거나 범위반 사실없이 종결 된 경우는 제외
- ⑧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 여부
 - ➔ 사업장에서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 지방관서(지역협력과)에 해당 사실 즉시 통보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중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 약정해지
- (필수 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내역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그 입력내용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함
 -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기업이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첨부한 구비서류가 정확한 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금액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확정 후 지원금 지급
- 월 중간(급여산정기간 중간)에 채용·이직·계약기간 만료 또는 병가, 휴가 등의 이유로 실제 급여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 * 예시: 전문인력 임금이 350만원으로 지원금이 250만원(1차년도 자부담 20%)인 경우
 지원금 일할산정 방식 : 총 급여산정일수가 31일인 달에 26일 동안 근무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은 2,096,770원(2,500,000원 X 일수(26일)/총 급여산정일수(31일))

3-2. 전문인력 관리

-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중단·위탁해지 등의 사유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안내 등 지원
- 전문인력 사업관리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일반인력) 사항을 준용할 수 있음



별표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약정서(안)]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약정서 (OO분야, O년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OOO기초자치단체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OOO기업 (이하 “사업참여기업”)이라 한다) 간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분야:

▶ 지원인원: 명

*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다만,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사업참여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

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전문인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근로자는 “사업참여기업”에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참여기업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참여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사업참여기업”의 소재지 및 “사업참여기업”이 지정한 사업현장으로 한다.

⑤ “사업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① “사업수행기관”은 전문인력 1인당 월 250만원을 한도로 “사업참여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에서 “사업참여기업”의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기간 동안 지급한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사업장이 아닌 경우, 서면근로계약서에 사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

② “사업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업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다만, 참여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수(주휴일 포함) 만큼 지원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여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④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원수준 조정 등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급 수준을 축소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약정한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중지일부부터 약정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된다.



제6조(지원금의 미지급)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된 경우
2.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참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붙임]에서 정한 참여제한자를 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타 지원금을 중복수령하거나 참여자가 타 사업에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증지원을 받은 때
4.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 또는 4대보험료 체납이 있거나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그밖에 “사업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참여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용한 때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속지원의 결정) “사업수행기관”은 기 지원인원의 효과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은 계속지원에서 제외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수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참여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참여기업”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지침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사업참여기업”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사업참여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이 제2항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제1항 및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⑤ “사업참여기업”은 전문인력을 지정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 근로자가 해당분야 이외의 부수적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은 당해 인원의 수만큼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⑥ “사업수행기관”은 부정수급이 참여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의 참여를 중지하고, 참여중지한 근로자수 만큼 “사업 참여기업”의 배정된 지원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⑦ “사업참여기업”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전문인력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⑧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금 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사업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①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7.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8.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9.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제15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업참여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사업참여기업”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 지원금 신청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까지(예비 5월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8조(자립방안 강구)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참여제한자의 범위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표 2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경력요건	①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성이 있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④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가.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 각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중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인증 사회적기업	전 문 인 력 지 원	~ . . .	
		일 자 리 창 출 지 원	~ . . .	
		사 업 개 발 비 지 원	~ . . .	
		전 문 인 력 지 원	~ . . .	
	사 회 보 험 료 지 원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부처(자치단체)명		
				지 원 내 용		
				지 원 기 간		
				지 원 금 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ID 제출)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추후 교육 과정 변동 가능)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 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2) 신청분야
 -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기업 고용변동 신고서							
기업유형 (약정서 기준)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형)						
◆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예비 지원연차 (약정서 기준)				지원기간		0000-00-00- 0000-00-00	
지원근로자 (배정인원)	0명 (0명)			지원 일반근로자		0명	
				지원 취약계층근로자		0명	
연락처 (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 고용변동 내용(필요 시 별지 작성)							
성명	생년월일 (00-00-00)	성별 (남/여)	근로자 유형 (일반/취약)	취약계층 분류번호 (해당 시)	입사일 (0000-00-00)	퇴사(예정)일 (0000-00-00)	퇴사사유
위와 같이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기업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div>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관서, 관할 자치단체장 귀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p>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기타 법인, 비영리단체</p> <p>2.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기타(문화단체 등)</p>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총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지원 ~	
		전문인력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회보험료지원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업개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input type="checkbox"/> 예비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1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20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input type="checkbox"/> 경력자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소지자 <input type="checkbox"/>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input type="checkbox"/> 경력자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소지자 <input type="checkbox"/>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전문인력 참여예정자 명단(신규, 추가)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기관명			대표자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락처 (휴대폰)	Tel: (Fax:)	담당자	성명: (e-mail:)	
사업내용				
참여예정 전문인력 수	명	참여예정자 중 고령자 수		명
구비서류: 1. 참여예정자 명단 2.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고용보험 취득 이력내역서 및 사용·경력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5.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6. 학위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기타 전문인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뒷쪽)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기간	고령자 여부	휴대전화	비고
1	김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고령자		
2	이길동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해당 약정기간 중 참여자의 참여기간	-		
3						

【 전문인력 참여제한자 유형 】

1.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3.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5.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6.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단체의 구성·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인 경우만 해당되며, 수익만을 받기 위한 회원은 제외)
 - * 단체의 운영의 주체 해당 여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생활 협동조합/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해당됨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 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7. 외국인. 다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참여 가능
8.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9.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다만,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자 참여가능
10.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11.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 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7호의3서식]

OO시

수신자 (재)OOOO

(경유)

제목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승인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대상자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적정하여 승인 결과를 알려드리니, 승인된 지원대상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전문인력 참여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을 우리 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승인여부	비고
OOO	00.00.00	적정	적정	승인	영업분야

끝.

OO시장 (인)

주무관 OOO

OOO
팀장 OOO

OOO
과장 OOO

협조자
시행
우
전화

접수

전송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2.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3. 확인내용

사무실 설치여부	1. 설치 2.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1. 고용 2. 미고용
사업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년 ()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주민번호)	(-)	
인증(지정)번호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여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인증(지정)유형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신청내역 원 (명)				
중견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	
		전문인력 지원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	
전문인력 지원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하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건비 산출내역 (당월분)	근로자명	계산기간	지급총액	신청금액	비고
		초일~말일			
	합계				
* 지급총액: 세액공제 전 임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뒷쪽)

❖ 구비서류:

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 급여 이체내역(자체 고용근로자 포함)
 - *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출근부·근무상황부
 - (출근부) 지원금 계산에 필수적이므로 출근 및 결근 여부 등을 정확히 명기·확인하여 제출
 - (근무상황부) 지원금 계산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지각(조퇴), 출장, 연차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근무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 미제출 가능)
 - 통장사본(최초 제출시, 변경시)
 -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 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 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2) 신청분야
 -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1]

제7차한국표준직업분류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사무원
				312 경영 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 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531 통신 관련 판매직		
	532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 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772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1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782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78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12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822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843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자동차 기관사
		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873 자동차 운전원
		874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876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893 기타 기계 조작원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 군인	A0 군인	A01 장교
		A02 부사관
		A09 기타 군인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2]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소정근로의 대가)
 -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예: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
 -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①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 * 다만,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② 정기성

-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③ 일률성

-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일률성' 요건의 구체적 적용 】

-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②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眞性 가족수당)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④ 고정성

-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고정성 판단기준
 -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 없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사전확정성)
 - '추가적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함
 -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함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 예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 * 예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
-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 * 예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 ☞ 통상임금이 아님
 -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 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예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 위 예시에서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 ☞ 통상임금이 아님
 - (소정근로의 대가 부정)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
 - (고정성 부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함
-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 예시: 퇴직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 해당
 - (고정성 인정)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 ☞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 예시: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 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됨(나머지는 통상임금 아님)
-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
 -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 예시: 성과연봉
 - (고정성 부정)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자격수당 등)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 * 예시: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출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보도자료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초치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부정수급

Part

04

I. 총 칙

- 1. 정 의 214
- 2. 근거 및 적용시기 214
- 3.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214

II. 사업추진체계

- 1. 처리절차 216
- 2. 운영주체별 역할 217
- 3. 단계별 조치사항 218

III.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 1. 부정수급액 환수 223
- 2. 제재조치 225
- 3. 제재 부가금 부과 및 징수 230
- 4.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236
- 5. 행정사항 237



I 총 칙

1. 정 의

-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 “부정수급자”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말함
- “부정수급액”이란 부정수급자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함

2. 근거 및 적용시기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3.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 보조금 횡령: 일단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 보조금 편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기존 자체 고용근로자 등을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참여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참여근로자 명부, 참여근로자의 출근부, 근무상황부, 출장부 등을 허위 작성한 경우
 - * 다만, 사업참여기업의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처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 부당이득금(不當利得金)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損失)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을 말함(민법 제741~749조)
- ▶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송관련 업무는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민사소송)

■ 사업참여기업 선정 신청서(재심사 포함)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 사업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허위작성
 - 퇴직자의 퇴사사유 허위기재 또는 신고지연 등으로 고용조정(감원) 사실을 숨기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자료 및 총수입, 매출액 등 회계장부 등을 허위 작성·제출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재심사 포함) 등
-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주 또는 참여근로자 등의 행위가 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행위



II 사업추진체계

1. 처리절차



2. 운영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 본 부

- 부정수급 사전예방활동 계획수립
-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예방활동에 대한 지도·점검, 평가 등 총괄 조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참여
- 부정수급 조사관련 기초자치단체 지도감독
- 부정수급 예방 모니터링, 제재부가금(국비) 처분

2-2.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관할 기초자치단체 부정수급 예방활동 총괄

■ 기초자치단체

- 분기별 정기점검, 합동점검 수행
- 부정수급 조사, 처분, 형사고발, 제재조치 등
- 부정수급 관련 정보수집

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부정수급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구축·운영



3. 단계별 조치사항

3-1. 부정수급 예방활동

■ 기초자치단체

- 사업참여기업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알려 무지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해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의의
 - 부정수급의 개념 및 부정수급 적발 시의 불이익 처분 내용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자료 활용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의 ‘부정수급 조기경보시스템’에 알립 내용 확인
 - * 「근로자수 “0”, 고용유지신고」 등 담당자의 확인처리가 필요한 사항
- 참여근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따른 전화를 통한 사업 참여 만족도 및 부정행위 여부 등 확인
 - *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주기) 통합시스템에서 퇴사근로자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지방관서)
-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분기별 퇴사근로자에 대해 전화로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관련 부정수급이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
- (조치) 부정수급 의심자 확인 시 전화복명서를 남긴 후 기초자치단체 통보→ 지방관서 + 기초자치단체 특별점검 후 조치

3-2. 부정수급 조사

■ 부정수급 관련 정보수집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도·점검 및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확인 또는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 수집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을 통해 사업참여기업의 타 일자리창출사업 중복참여 여부 수시 확인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 등 검토

■ 사실관계 조사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각종 증거자료 수집
 - 지원금의 사용용도 확인을 위한 자료(지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
 - 참여근로자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고용보험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 사업참여기업 선정(재심사 포함) 관련 증빙자료 등
- 현장조사 및 참고인 조사
 -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반납 받아 수익금으로 처리하거나 운영비로 사용하는지 등 확인
 - 참여근로자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을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결근자·출장자 등의 출근부 대리서명 또는 대리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 장소가 외부인 경우에는 직접 근무 장소를 방문하여 확인
 - 필요시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자 등 참고인 면담 실시



3-3.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

■ 관련 증빙자료 확보

- 허위 작성된 서류 사본 징구(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확인 날인)
- 참여근로자 중 부정수급과 연관된 자로부터의 확인서 징구(근로일, 근무 장소, 담당업무, 임금 수령 등 관련사항 적시)

* 사후 확인시 공모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류 확보

■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부정수급에 따른 약정해지, 환수금액 등 제재 사항)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변명 등 의견을 청취

■ 의견청취

- 불이익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의 법률적 실현방법 중의 하나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지원금 지급중지

-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수사기관 조사, 점검 중 적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참여기업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 지원금 증지는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채권확보 및 지급신청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부정수급 정황 발견에 따른 지원금 지급 증지가 지연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확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조치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모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급제한

3-4. 부정수급 사실 처리보고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는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 [별지 제3호서식]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징수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 * 부정수급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징수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를 의뢰
- 담당 부서에서 지체 없이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통지 하도록 조치

3-5. 부정수급 사실 통지

-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소관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처분 관련내용을 문서로 통보



- 처분시 즉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하고, 조치일 이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통보

* 통보시, <별지 제4-1호> 서식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다운로드 후 첨부하여 통보
(시스템 경로: 재정지원관리 > 행정처분 조치 및 관리 > 부정수급 등록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국비에 대한 부정수급 금액을 명시하고 관련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로 통지

Ⅲ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1. 부정수금액 환수

- (반환명령)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함
 - * 행정절차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함
- (납부기한)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함
 -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 (환수금액의 범위) 환수의 대상이 되는 부정수금액은 거짓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말함
 - 다만,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동안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환수
 -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초 사업참여기업 선정이후’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환수
- (지원금 지급의 일시 정지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분할납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정수급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한 때에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 분할납부 횟수, 기간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이는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액 반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임
 - 분할납부 기간 중 이자는 “분할납부계획서”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므로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법제처 법령해석 2010-0446, 2011.1.13.)
- (강제징수) 부정수급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강제징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채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 (소멸시효) 5년
 -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5년
- 소멸시효의 기산점: 발생일(지원금 지급일)

2. 제재조치

- 부정수급 시에는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처분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함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부정수급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제한 5년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제한 3년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부정수급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제한 1년

* 2015년~2021.12.15.까지 부정수급 기업 모든 재정지원사업 영구배제

* 2021.12.16.부터 부정수급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의2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 유형·횟수별 지급제한 기간 적용하여 처분

* 단순착오나 실수 등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당 이득으로 처리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 기능: 고의성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소명자료 검토,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심의
- 구성(6명 내외): 광역 담당과장(위원장), 당연직위원: 광역 담당팀장, 법률전문가, 수사기관(검경) 관계자, 기타위원: 광역 감사부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팀장 등

-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고용창출지원 등)에 참여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 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 행정절차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개발비·지역특화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e나라도움에 '수행배제 처분결과' 등 등록 필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해석(대판 2009.6.11. 대판 2006.10.27.)

- ▶ 고의: 속일 의사를 가지고 부정의 의도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수행 배제·지급제한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2.16. 개정시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021.12.16. 개정시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021. 12. 16. 신설 시행>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7. 7. 5., 2021. 12. 16. 개정시행>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부과기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행 배제 기간(이하 “수행배제기간”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021.12.16. 신설시행>
- ②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이하 “지급제한기간”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부과하는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5]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수행배제기간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수행배제 부과기간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나.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년

[별표 6] 지급제한기간의 부과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지급제한기간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지급제한 부과기간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년

[별표 7]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수행배제기간의 부과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수행배제기간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수행배제 부과기간
법 제31조의2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	1)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2)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
	3) 징역형이나 금고형 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	2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재 부가금 부과 및 징수

3-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지방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

* 행정절차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함(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 2021.1.14. 판결)

- (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표, 보조사업참여 수행배제 등의 벌칙 도입 등 제재 강화(이에 따라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부과절차) 부정수급 처분(자치단체) → 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확인 후 면제·삭감 해당여부 확인하여 지방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자치단체) → 제재부가금 부과통지(납부기한 30일 이내)
- (부과정지 사유)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대상 사업장에게 통지

※ 부정수급 기업이 주소지 이전 등에 따라 2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체 지방비 부정수급액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3-2.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자치단체로부터 부정수급 처분 통보받은 경우 자치단체의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국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

* 행정절차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함(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 2021.1.14. 판결)

- (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표, 보조사업참여 수행배제 등의 벌칙 도입 등 제재 강화(이에 따라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부과요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시행일) 이 법 시행이후(2016.4.29. 시행)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부과절차) 부정수급 처분결과보고(자치단체) → 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확인 후 면제·삭감 해당여부 확인하여 국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지방관서) → 제재부가금 부과통지(납부기한 30일 이내)
- (부과정지 사유)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대상 사업장에게 통지
 - ※ 부정수급 기업이 주소지 이전 등에 따라 2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전체 국비 부정수급액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대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과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과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과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1호]

제41조(제재부과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과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과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재부가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재부가금의 부가금(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강제징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보조금법 제33조의3(강제징수) 및 지방보조금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4.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 수사의뢰 대상

- 지원금 유용·횡령,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부정수급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나 자료 확인 및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 부정수급 의심이 농후하나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찰 등과 사전협의하여 수사의뢰 적극 활용

● 고발대상

-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임원, 관리자, 근로자 등 지위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행위자를 모두 고발함

-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

- 사업주와 공모한 근로자

-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234조)
- ▶ 고발방법: 기초자치단체장이 고발자로서 당해 참여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
- * 형사고발 면제: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 고발장을 제출할 때에는 조사복명서, 본인진술서, 기타 당해 부정수급 관련 증빙 자료 사본(원본대조 날인)을 첨부

5. 행정사항

- 소관 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하고, 조치일 이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4호>,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통보

- *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위해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시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 문서로 통보
- * 통보 시, <별지 제4-1호> 서식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서 다운로드 후 첨부하여 통보 (시스템 경로: 재정지원관리 > 행정처분 조치 및 관리 > 부정수급 등록 및 관리)

-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공모하여 노무·회계 관련서류를 조작,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조사결과도 보고

* 기업개요, 사업명, 지원기간, 부정수급 내용, 부정수급 인원 및 금액, 조치결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 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통보받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지급제한 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관련 내용 통보



-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참여기업의 “주의”, “경고”를 포함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에 입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생략)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별지 제4호서식]

〇〇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해당하는 사업 기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정수급 처분사실 통지서 1부. 끝.

〇〇시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과장), 사업장 소재지 소관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장), 처분자치단체 소관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업무담당과장), 다른 모든 중앙행정기관, 전국 다른 자치단체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부정수급 업무처리지침[별지 제4-1호서식]

부정수급처분 사실 통지서

사업장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000-00-00000)
인증번호 (지정번호)	인증일자 (지정일자)		
사업장 주소			
부정수급 발생사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 사업		
부정수급유형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사유 기재)		
적발경위	합동점검/ 제보/ 수사기관 수사 / 기타		
처분대상 부정수급 최초 발생일 (지원금 지급일)	ex) 0000.00.00.	처분대상 부정수급 마지막 발생일 (지원금 지급일)	ex) 0000.00.00
부정수급 내용(사유)	ex)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허위신청하여 '21.7월~'21.8월까지 보조금 2,000,000원 편취		
부정수급 금액 (환수결정 총액)	국비		
	지방비		
처분내용	ex)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등		
처분일자	2024.00.00.		
부정수급 제재기간	수행배제	ex) 2024.2.1.~2024.1.31.(5년)	
	지급제한	ex) 2024.2.1.~2024.1.31.(5년)	
기타	ex) 지정취소 등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재정지원 세부조치기준

Part

05

1.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치기준	250
2. 행정처분 적용기준	252
3. 가중처분	261
4. 선정취소·약정해지 및 지급중지 적용	263
5.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270
6. 부정수급 적용	274
7. 소멸시효	278
8. 부정수급에 따른 명단 등 공표	286
9. 행정처분 절차	287



1.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치기준

- 업무지침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조치기준에 명확하게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

위반내용	조치기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공고일(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선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조정(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가 확인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취소 및 환수(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부정/부당이득 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기간 중 근로자를 고용조정하거나 고용유지 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한 것이 확인된 경우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조정(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가 확인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고용조정, 자진퇴사자 수를 제외한 인원 수 만큼 확정·승인 •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사한 근로자 업무를 先채용한후 추가적인 전문인력 승인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기간 중에 참여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해지 및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조정 시점 이후 지원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해지 및 환수(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부정/부당이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한 시작일 또는 확인 불가시 확인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을 받은 후 일정액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 또는 반납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해지 및 환수(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부정/부당이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 등을 받은 시점이후 지원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 	지급중지 및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이미 지급) 경고 • (지원금 지급전) 지급보류 → 임금청산 후 지급 →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청산: 진정취하나 일부 지급이 아닌 전액청산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고용근로자 1명 이상 근로여부 확인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기간 중 자체 고용근로자가 1명도 근로하고 있지 않은 경우(경고) • 단, 선정 이전부터 자체 고용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선정취소

[참고] 부정수급 조치기준 변동추이

■ 처분기준

2011~2013	→	2014
① 50만원 미만: 경고 ② 50~200만원: 다음 월 지원금 10% 삭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한단계 하향 가능(경고) ③ 200만원 이상: 약정해지, 타 기관 통보		① 50만원 미만: 경고 및 부정수급액 환수 ② 50만원 이상: 약정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약정해지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한
2015	→	2016
① 50만원 미만: 경고 및 부정수급액 환수 ② 50만원 이상: 약정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 약정해지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영구배제		① 금액에 관계없이 약정해지

■ 고발기준

2011	→	2012 ~ 2013	→	2014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3,000만원 이상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3,000만원 이상 ③ 부정수급 2회 적발된 자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1000만원 이상 ③ 부정수급 2회 적발된 자
2015	→	2016	→	2018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 ③ 부정수급 2회 적발된 자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③ 사업주와 공모한 근로자		① 지원금 유용 또는 횡령한 자 ② 부정수급액 무관 ③ 사업주와 공모한 근로자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2. 행정처분 적용기준

■ 일반기준

- 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 나.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개별 재정지원사업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어느 하나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재정지원사업도 연계하여 선정취소 또는 약정 해지 한다.
- 라.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로 적용하게 되면 위반행위의 적발시점에 따라 사실상 처분이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 고려

■ 사례1: 1차 점검: A임금체불(처분: 경고) → 2차 점검: A, 임금체불 ⇒ 행정처분 불가

구분	약정기간 ('23.1.1. ~ '23.12.31.)			
1차	'23.2.4. (A위반)	'23.3.4. 적발(점검, 제보)	'23.3.10. 행정처분	
2차 (사례1)	'23.2.10. (A, 위반)		'23.7.20. 적발(점검, 제보)	'23.7.30. 행정처분 할 수 없음

■ 사례2: 1차 점검시 A임금체불(처분: 경고) → 2차 적발시: A, 임금체불(행정처분 불가) B고용 조정(처분: 경고, 위반행위가 다르므로) ⇒ 약정해지 불가(1차 위반과 약정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가중처분 불가)

■ 사례3: 1차 점검: A임금체불(처분: 경고) → 2차 점검: C허위근로자 ⇒ 약정해지, 지정취소

구분	약정기간 ('22.1.1. ~ '22.12.31. / '23.1.1. ~ '23.12.31.)									
1차	'22.11.2. (A위반)			'23.4.12. 행정처분(경고)						
2차 (사례2)	'23.1.11. (A' 위반)		'23.3.2. (B위반)		'23.7.20. 적발 (제보)		B에 대한 처분 (경고)			
2차 (사례3)	'23.4.2. (C: 허위근로자 부정수급)				'23.11.20. (제보)			'23.12.14. 약정해지		

마. 수사기관의 수사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지급중지 처분을 해야 한다.

- 다만 지급중지 통지 전에 수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안유지를 위해 수사종료 시까지 지급통지를 보류해 달라는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중지 통지를 늦출 수 있다.

바. 약정해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은 아래와 같다.(아래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적용)

대체채용, 다른 업무종사 → 대체채용 시점/다른 업무종사 시점 또는 확인시점	임금지급 후 반납 → 최초 반납시점	2회 경고누적 → 처분일 다음날	불법행위 → 관련기관이 판단한 날	시정지시 불이행 → 시정기한 종료일 다음날	목적 외 사용 → 목적 외 사용한 날	3월 이내 50% 미채용 → 3개월 경과한 다음날 * 채용일: 근로개시일	제3자 양도 → 계약서상 양도한 날	불법시위 참여 → 최초 참여한 날
--	---------------------	-------------------	--------------------	-------------------------	----------------------	---	---------------------	--------------------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약정해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 다만, 약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약정해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약정해지 절차는 하지 않으나 그 효과는 약정해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 지원금은 다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보조금법 제31조제1항)
- 어느 하나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지급중지한 경우 모든 재정지원사업은 지급이 중지된다.
 -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모든 재정지원사업은 지급중지일 부터 약정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처분 등을 한다.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일(약정해지)에 관련 없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환수해야 한다.
 - 이 경우, 정상적인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중지 시점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정수급이 아닌 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 정상적인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일(약정해지)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별기준

* 아래내용에 없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시로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사업별 업무지침 또는 약정서에서 정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각 사업별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붙임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을 따른다.

1. 공통사항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된 경우		지급중지 및 주의	지급중지 및 경고
나.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지침 또는 약정서	경고	약정해지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경고	약정해지
라.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급중지 및 경고	약정해지
마.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또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일정액을 기부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 또는 반납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
바.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약정해지	-
사. 승인 없이 약정계약에 관한 관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약정해지	-
아.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지	-
자.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에 대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약정해지	-
차. 자체 고용근로자 1명 이상 근로여부 확인		지급중지 및 경고	약정해지
카. 기타 약정서에 명시된 사유나 자치단체장이 약정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		약정해지	-

2. 일자리 창출지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침 또는 약정서	선정취소 및 환수	-
나. 약정기간 중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고	약정해지
다.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고 및 환수	약정해지
라.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
마. 매출액을 이 지침에 의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1천만원 기준)		경고 또는 약정해지	약정해지 -
바.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채용(근로개시일 기준)하지 못한 경우		약정해지	-
사.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약정해지	-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3. 전문인력지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침 또는 약정서	선정취소 및 환수	-
나. 약정기간 중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고	약정해지
다.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
라.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해지	-

[붙임] 주요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 「주의 또는 경고」중 시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병행

** 주의의 경우도 시정지도하고 미이행시 주의 조치, 이행시 종료(단, 이행시라도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 조치)

▣ 공통기준

위반내용	조치기준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해지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3.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지
5.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약정해지
6.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또는 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7.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약정해지
8.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약정해지
9.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한 경우	약정해지
10. 심사·승인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경고
11.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 거부한 경우	경고
12.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의미함)	지급중지 및 경고
13. 자체 고용근로자 1명 이상 근로여부 확인	지급중지 및 경고



▣ 일자리 창출사업

구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 약정체결 지연	주의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경고
	■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금 사용 미이행	주의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 지역시장과 충돌하거나 교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수행	주의
참여근로자 관리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미채용 *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약정해지
	■ 참여제한자의 사업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환수
	■ 취약계층 고용비율 미충족	주의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환수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 임금 등 체불	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 * 근무장소, 근로시간, 담당업무, 급여 등	주의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환수
회계관리	■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주의
	■ 매출액 및 수입금 관리	주의
	■ 매출액의 목적 외 사용(1천만원 미만)	경고
보 고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환수
부정수급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취한 경우	약정해지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 전문인력 지원사업

구 분	위반내용	조치기준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체결 지연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의 무단변경(불승인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 *약정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경고
참여근로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미채용(기존 전문인력이 퇴사하여 3개월내 미채용한 경우 포함) 	약정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자의 사업 참여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경고+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 미가입, 사회보험료 체납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 체불 	경고
보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퇴사자 발생 등 미보고(지연보고) 	주의
서류작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지원약정서 등 사업관련 서류의 미게시(미비치)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무관리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근로자 근태상황 관련서류의 미작성(미비치) 	주의
중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사업 중복참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 지원) * 사업주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주의+환수
부정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주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참고] 약정해지 사유별 부정수급 판단

약정해지	부정수급 유무	위반사유 해당하는 날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 고의·과실 판단하지 않음 (고의성 있음)	행위를 한 날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처분일 다음날
3.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기한 종료일 다음날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관련기관이 판단한 날
5. 참여근로자가 일자리창출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수행 5-1. 전문인력이 지정된 분야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5-2. 목적외 사용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 비용 불인정, 사업참여기업 부담)	· 고의성 유: ○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 수익을 얻은 날 · 다른 업무 종사 또는 확인시점 · 목적 외 사용한 날
6.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 · 고의·과실 판단하지 않음 (고의성 있음)	대체채용시점
7. 지원금(또는 임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 고의성 유: ○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최초 반납시점
8.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고의성 유: ○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목적외 사용한 날
9.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	3개월 경과 다음날
10.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계약서 상 양도한 날
11.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사업 수행기관”이 판단한 경우	· 고의성 유: ○ · 고의성 무: × (부당이득)	행위를 한 날

3. 가중처분

■ 목 적

-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 약정기간 내 2회 주의를 받은 경우 → 경고,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 약정해지

■ 일반기준

- 위반행위 횟수 기준이 아니고 행정처분 횟수 기준으로 적용
- 기업별이 아닌 재정지원참여 사업별 약정기간내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기준으로 적용

* 1차 위반: 현지도 1건, 주의 4건 → 2회 가중처분 적용기준: '주의'

* 1차 위반: 주의 8건, 경고 1건 → 2회 가중처분 적용기준: '경고'

- 차수에 따른 가중처분은 종전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

⇒ 적발시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

* 1차 위반('24.3.4. 점검, '23.2.4. 위반행위를 한 날, '23.3.10. 행정처분) → 2차 점검 ('23.7.20. 점검, '23.2.10. 위반행위를 한 날, '23.2.10. 위반사항은 가중처분 할 수 없으며, '23.3.11. 이후 위반사항만 가중처분 적용)

- 부정수급이 아닌 경고 누적에 따른 가중처분으로 약정해지 시 해당 재정지원 사업에 한해 약정해지

* 전문인력 경고 2회로 약정해지 → 일자리창출은 계속지원 가능



■ 가중처분 적용 예시 ■

구분	지원기간 ('23.1.1. ~ '23.12.31.)						
1차	'23.2.4. (A위반)	'23.3.4. A적발 (점검, 제보)	'23.3.10. A행정처분				
2차	'23.2.25. (B위반)			'23.7.20. B적발 (점검, 제보)	'23.7.31. B행정처분 (가중처분은 불가)		
2차					'23.8.10. (C위반)	'23.11.11. C적발 (점검, 제보)	'23.11.25. C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 재정지원사업별 가중처분 예시 ■

구분	약정기간(1년차)				약정기간(2년차)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공통	주의(4) 시정명령(1)	주의(2) → 경고	주의 → 경고	약정 해지	시정명령(1) → (불이행)경고	주의(2)	주의 → 경고	약정 해지
(행정처분기준)	주의	경고	경고		경고	주의	경고	
	경고(2)	주의(2)	주의(4) → 경고	약정 해지	경고(2)	주의(2)	주의(4) → 경고	약정 해지
(행정처분기준)	경고	주의	경고		경고	주의	경고	
일자리창출지원	주의(2)	주의(5) → 경고			주의(2)	주의(5) → 경고	주의(3)	
(행정처분기준)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주의	
	경고(1)	주의(3) 경고(1)		약정 해지		주의(3) 경고(1)	주의(3)	
(행정처분기준)	경고	경고				경고	주의	
전문인력	주의(3)	주의 → 경고			주의(3)	주의 → 경고		
(행정처분기준)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일자리창출지원	주의(2)	경고	주의(2) → 경고	약정 해지	주의(2)	경고	주의(2) → 경고	약정 해지
(행정처분기준)	주의	경고	경고		주의	경고	경고	
전문인력	경고(2)	경고(2)		약정 해지	주의(2)	주의(2)	주의(5)	
(행정처분기준)	경고	경고			주의	경고	주의	
	주의	주의 → 경고			주의(5)	-	주의(3) → 경고 경고(1)	
(행정처분기준)	주의	경고			주의	주의	경고	

4. 선정취소·약정해지 및 지급중지 적용

- ▶ 선정취소: 재정지원(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선정(지원) 당시에는 자격(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선정(지급)되었으나 이후 고용조정사실 등 참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영향) 지원금 전액 환수
- ▶ 약정해지: 재정지원 참여 중 부정수급, 3개월 기한 내 채용요건 미 충족 등 약정해지사유 발생시 행정처분(약정해지)하고 지원 종료
⇒ (영향) 약정해지일 부터 지원금 지급중지, 정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유효하여 환수하지 않음. 다만 행위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 발생일 부터 환수
- ▶ 지급중지: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을 경우
⇒ (영향) 모든 재정지원 지급중지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약정체결한 모든 재정지원사업은 지급중지일부터 약정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 해당 사업장에는 지급중지일을 명시하여 문서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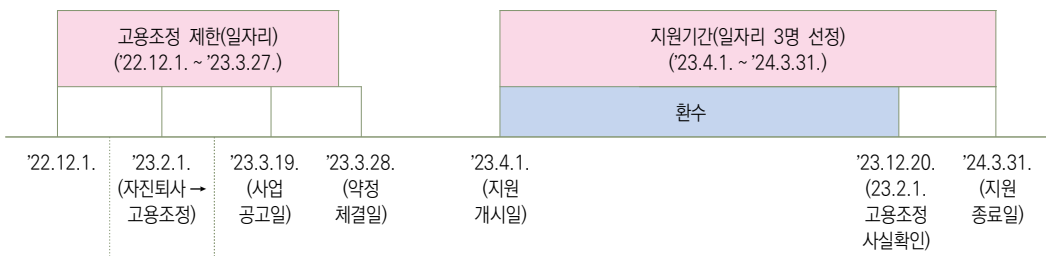
■ 일반적인 적용사례

가. 선정취소

예)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참고 :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1537, 2009.9.15.,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2108, 2009.11.3.

☞ 2023.4.1. 약정개시일부터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3명 지원금 전액 환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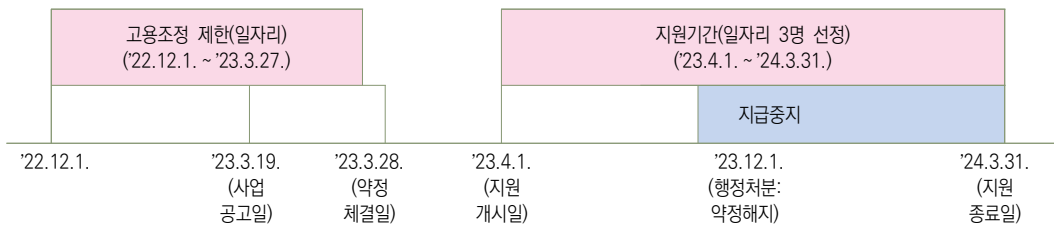
재정지원세부조치



나. 약정해지

예) 참여자 3명을 지원받던 중, 부정수급이 아닌 사유로 3개월 기한내 미채용 등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여자 3명은 약정해지일인 2023.12.1.부터 지급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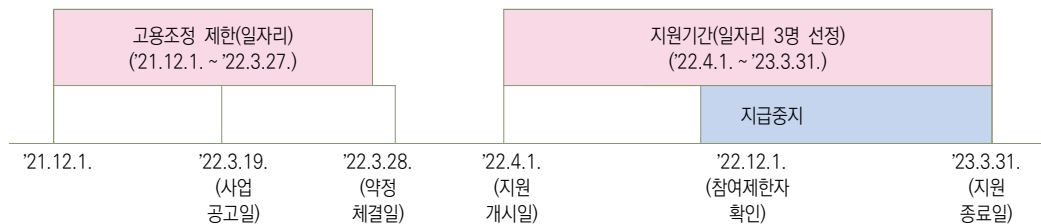


다. 경고

예) 고의성이 없으나 참여자 3명 중 1명이 참여제한자(관련기업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 참고 : 사회적기업과-97, 2011.1.10., 사회적기업과-1941, 2016.6.14.

☞ 참여자 2명은 계속지급, 참여제한자 1명은 참여제한자 지원일인 2023.4.1.부터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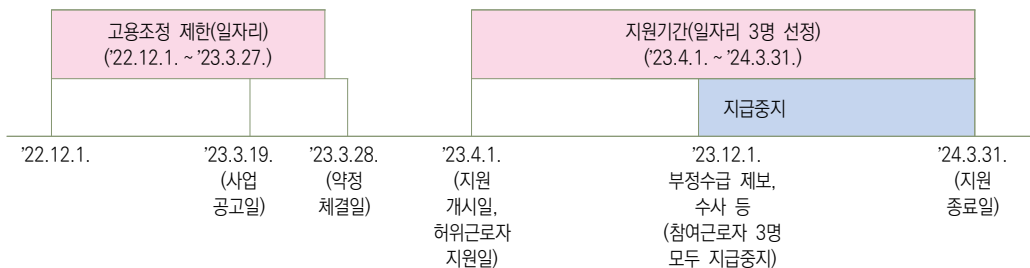
라. 지급중지

예) 참여근로자 3명 중 허위근로자 1명이 '23.4.1일부터 허위신청으로 부정수급 관련 수사기관 등이 수사 중인 경우

● 지원금 지급중지 시점부터 모든 재정지원사업 지급중지

* 참고 : 사회적기업과-1160, 2016.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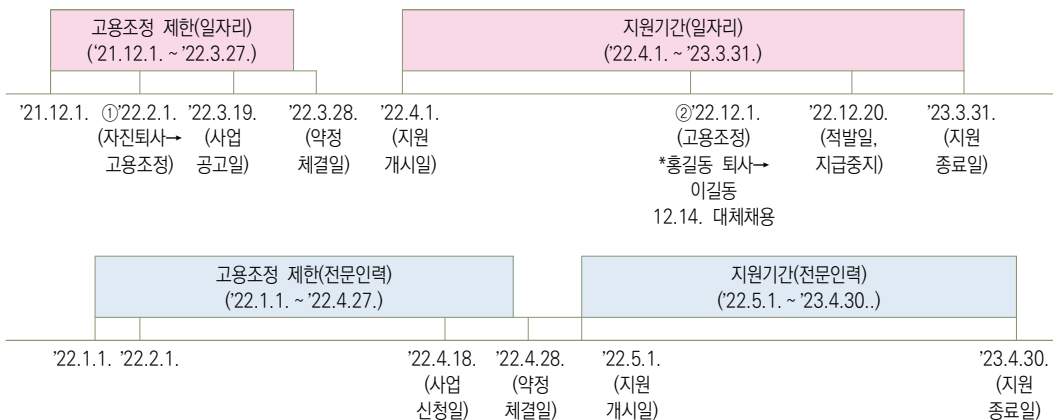
⊗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급중지일('23.12.1.) 부터 지원 종료된 것으로 봄. 다만, 허위근로자 1명은 2023.4.1.부터 환수



재정지원 사업간 연계

▶ 적용원칙: 재정지원(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다른 재정지원 사업도 약정해지

가. 지원기간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사례 1: 2022.2.1. 고용조정① ⇒ 요건 미충족

※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선정취소 및 환수

- (고의·과실 有)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사업개발비(지급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하고 반환)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2022.12.20.부터 지급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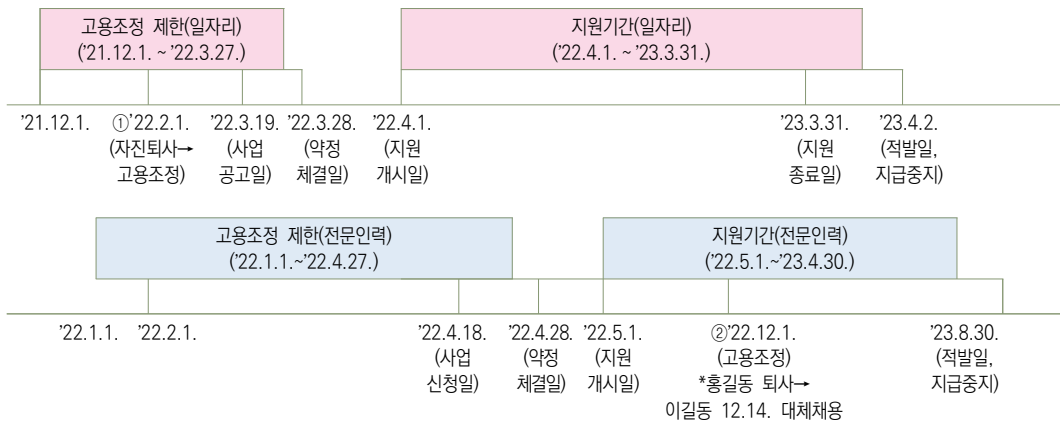
* 사회보험료는 일할계산이 없으므로 12월분부터 지급하지 않음(이하 사회보험료 동일)

■ 사례 2: 2022.12.1. 대체 채용 목적 고용조정② ⇒ 약정해지 사유

※ 대체채용은 고의성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2022.12.1.부터 환수하고

- 사업개발비(지급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하고 반환)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2022.12.20.부터 지급중지

나. 지원기간 종료後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 사례 3: 2023.4.2. 적발 → 2022.2.1. 고용조정① ⇒ 요건 미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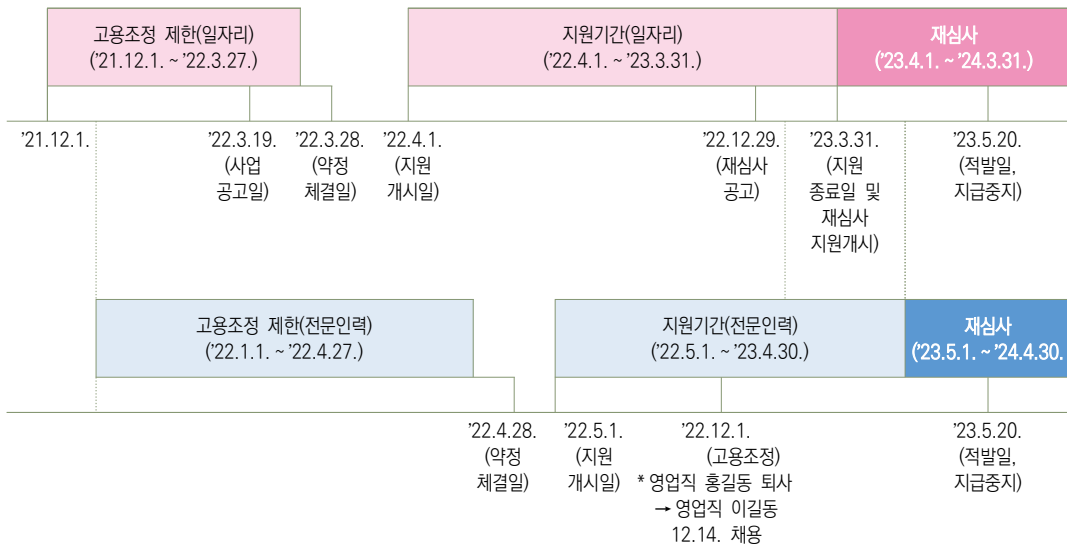
※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선정취소 및 환수

- (고의·과실 有)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사업개발비(지급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하고 반환)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2023.4.2.부터 지급중지

■ 사례 4: 2023.8.30. 적발 → 2022.12.1. 대체 채용 목적 고용조정② ⇒ 약정해지 사유

- ⊗ 대체채용은 고의성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전문인력 지원금은 2022.12.1.부터 환수하고
- 사업개발비(지급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하고 반환)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2023.8.30.부터 지급중지 하되, 일자리창출지원은 사업종료로 환수할 수 없음

다. 재심사 참여가 결정되어 지원중인 경우



■ 사례 5: 2023.5.20. 적발 → 2022.12.1. 대체 채용목적 고용조정 ⇒ 약정해지

- ⊗ 대체채용은 고의성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전문인력은 2022.12.1. 지원금부터 환수 및 재심사 선정취소
- 일자리창출지원과 사업개발비(지급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하고 반환)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2023.5.20.부터 지급중지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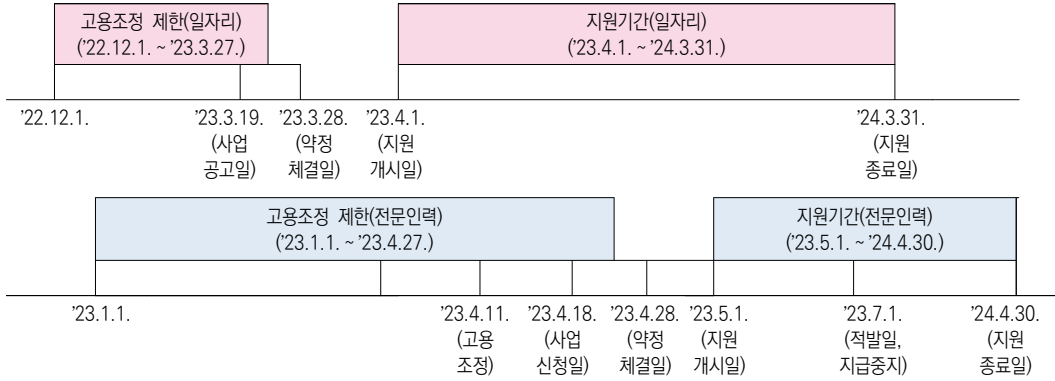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라. 약정체결 전에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 사례 6: 2023.4.11. 고용조정

⌘ 전문인력: 고용조정일이 약정체결일 이전으로 선정취소 및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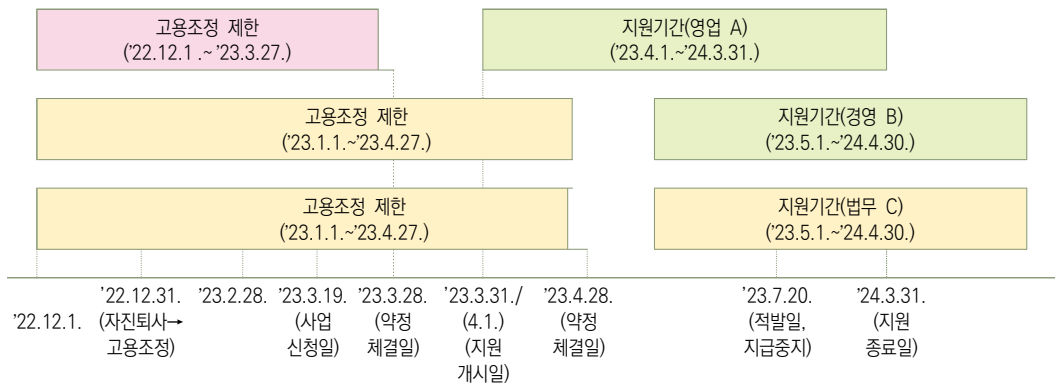
- (고의·과실 無) 일자리창출지원은 경고 및 계속지원
- (고의·과실 有) 일자리창출지원은 2023.7.1.부터 지급중지

마. 전문인력지원 (2개 분야 이상에서 받는 경우)

■ 사례 7: 2023.7.20. 적발 → 2022.12.31. 고용조정 ⇒ 요건 미충족

⌘ 선정취소 및 환수 (영업 A, 경영 B, 법무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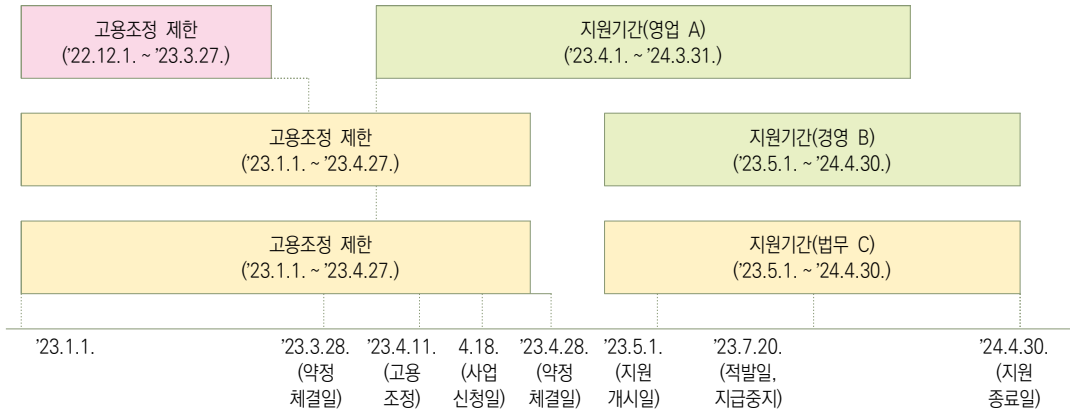
- (고의·과실 有)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다른 지원금도 2023.7.20.부터 지급중지



■ 사례 8: 2023.7.20. 적발 → 2023.4.11. 고용조정 ⇒ 요건 미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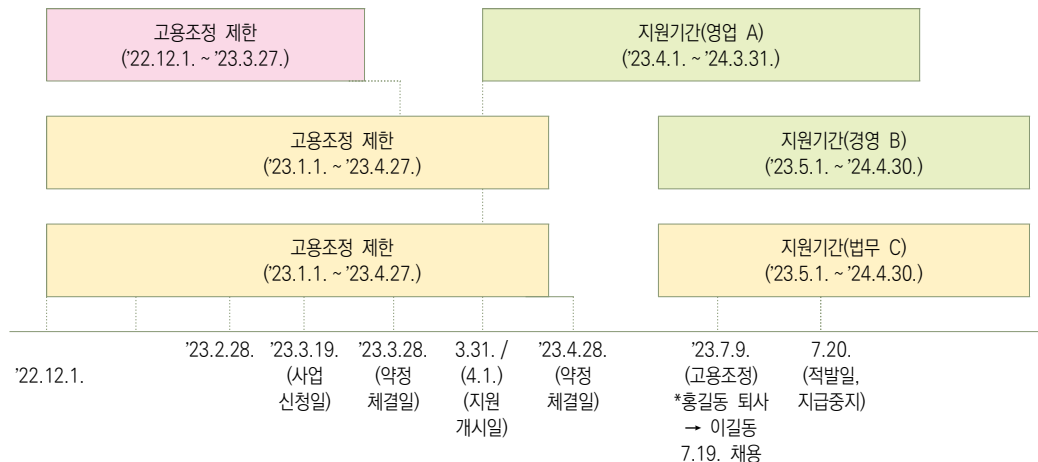
⊗ 선정취소 및 환수(경영 B, 법무 C), 영업 A는 경고 및 계속지원

- (고의·과실 有)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영업 A 및 다른 지원금도 2023.7.20. 부터 지급중지



■ 사례 9: 2023.7.20. 적발 → 2023.7.9. 대체채용 ⇒ 약정해지 사유

⊗ 대체채용은 고의성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영업 A 및 다른 지원금은 2023.7.20. 부터 지급중지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5.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

용어정의

- ▶ 고의: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
- ▶ 과실: 그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 ▶ 중대한 과실<민법 제109조>, 상당한 주의 및 중대한 과실<민법 제756 ~ 제757조>
- ▶ 표의자가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기울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대판 1995.12.12., 94다22453, 대판 1996.7.26., 94다25964등)
- ▶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상태(대판 2011.5.13., 2010다62680, 2011.11.24., 2011다41529 등)

판단의 필요성

- 참여제한자 사업참여 등 부적정한 재정지원에 대해 참여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으로 처분

지침규정

- 참여근로자가 사업참여 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30일 이내) 하였으나
 -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사업자등록 확인시점부터 지원금 부지급
(사회적기업과-2115, 2016.6.28.)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

- 부정수급시에는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 다만, 단순착오나 실수 등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당이득으로 처리
- 사업종료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나 이미 사업 참여가 종료되어 “약정해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및 부정수금액 환수

■ 그간의 주요 행정해석

- ▶ 사업계획서 사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외 업무에 참여근로자를 투입하였다면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함(사회적기업과-1820, 2010.7.28.)
- ▶ 2010년 지침부터 참여제한자 범위에 ‘근로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연계기관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었고,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참여시킨 경우에는 경고 조치 및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기 지원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사회적기업과-3120, 2011.11.18.)
- ▶ 참여제한자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업무 매뉴얼에 의거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등을 해야 함
 - 다만, 참여근로자가 지원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참여근로자 귀책사유로 참여제한자가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
 - 따라서 참여근로자가 지원사업 참여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지원사업 참여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음(사회적기업과-1944, 2015.7.6.)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 기능: 고의 또는 과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소명자료 검토,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심의
- 구성(6명 내외): 광역 담당과장(위원장), 당연직위원: 광역 담당팀장, 법률 전문가, 수사기관(검경) 관계자, 기타위원(광역 감사부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팀장 등)

■ 주요 적용 예시 ■

구분	판단기준		부정수급	환수	비고	
	고의 또는 과실	단순착오나 실수 등 (고의성 無)				
일반기준	○	×	○	○		
	-	○	×	○		
참여 제한자	친인척 등	○	×	○	○	
		×	○	×	○	
	참여 전 사업자등록	○	×	○	○	
		×	○	×	○	
참여 후 사업자등록	-	-	×	○	시정지시 미이행시 지급중지	
계획 변경	변경신고 불이행	○	×	○	○	

[참고] 고의 및 과실판단 관련 규정**민 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6. 부정수급 적용

부정행위로 의심되어 지급중지한 경우

- ▶ 조사를 위해 지급중지일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장에 지급중지를 통보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중지일 부터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봄

Ⅰ 사례: 일자리창출지원 4명 참여: A, B, C는 적정, D는 부정행위자 의심(허위, 참여제한 자 등)

- ① 2023.3.14. 정기점검시 부정행위 확인(2022.7.1. 부정행위: D 퇴사근로자 허위로 계속근무)되어 지급중지 (A, B, C, D)
- ② 의견제출 기간 부여: 3.14. ~ 4.3. (통상 10일 이상)
- ③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처분: 2023.4.10. 약정해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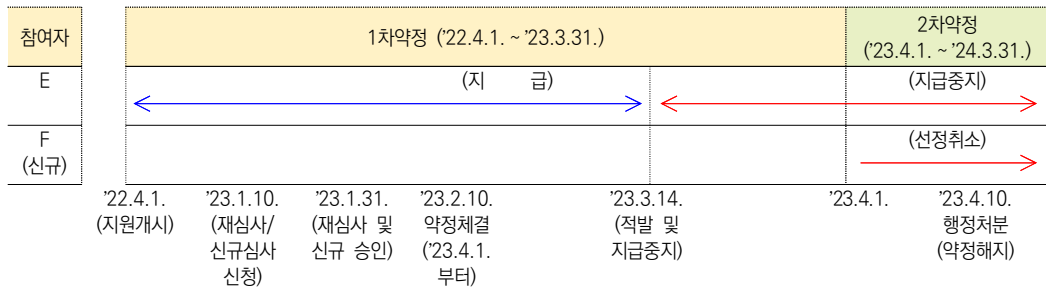
참여자	1차 약정 ('22.3.1. ~ '23.2.28.)		2차 약정 ('23.3.1. ~ '24.2.28.)	
	A	← (지급) →		← (지급중지) →
B	← (지급) →		← (지급중지) →	
C	← (지급) →		← (지급중지) →	
D		← (반환) →	← (지급중지) →	
	'22.3.1. (지원 개시)	'22.7.1.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 부정행위일)	'23.3.14. (적발 및 지급중지)	'23.4.10. (행정처분 (약정해지))

☞ (일자리창출) A, B, C는 2023.3.13.까지 지급, D는 2022.7.1.부터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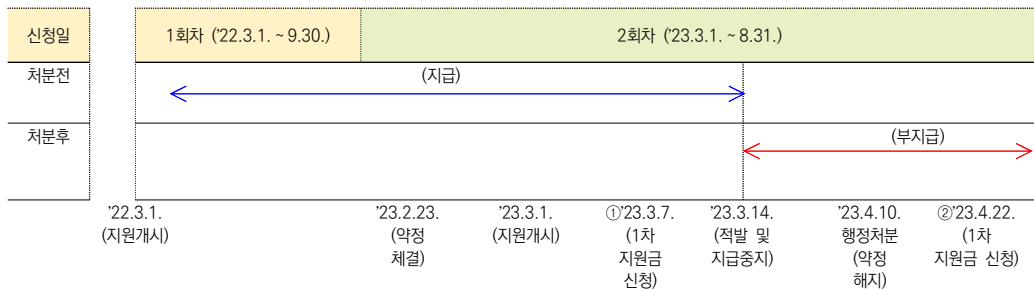
○ (다른 재정지원사업) 지급중지 시점인 2023.3.14.부터 지급중지

※ (전문인력) 2023.3.14.부터 'E'는 지급중지(약정체결 前인 'F'는 선정취소)

* E는 재심사, F는 신규심사를 통해 2023.4.1.부터 계속(신규) 지원이 확정된 경우임



※ (사업개발비) 2023.3.14.전에 신청이 들어왔으나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중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반환을 해야 함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사회보험료) 2023. 2월분 보험료까지만 지급하고 3월분 보험료는 일할 계산 없이 지급하지 않음

- 허위근로자 'D'의 보험료는 2022.7.1.부터 환수

참여자	1년차 ('22.1.1. ~ 12.31.)	2년차 ('23.1.1. ~ 12.31.)
A (일자리)	(지급)	(지급중지)
B (일자리)	(지급)	(지급중지)
C (일자리)	(지급)	(지급중지)
D 허위근로자 (일자리)	(반환)	(지급중지)
E(전문)	(지급)	(지급중지)
F(전문)	(지급)	(지급중지)
G (자체)	(지급)	(지급중지)
H (자체)	(지급)	(지급중지)
I (자체)	(지급)	(지급중지)

'22.1.1. (지급 개시일) '22.7.1.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 부정행위일) '23.2.28. '23.3.14. (적발 및 지급중지) '23.4.10. 행정처분 (약정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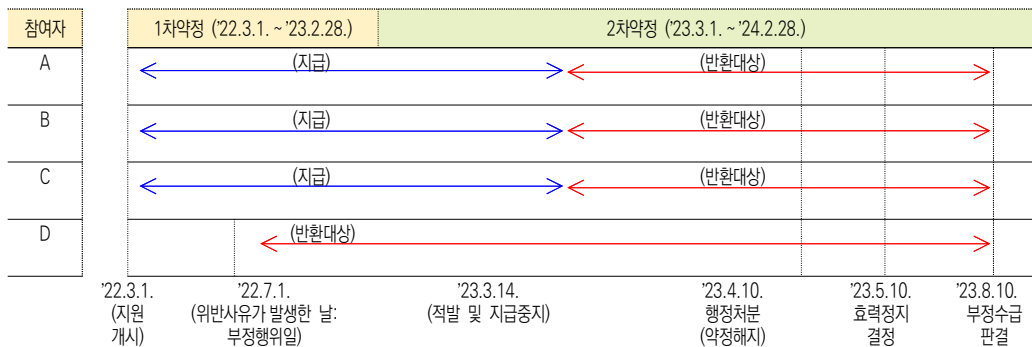
* 위 예시는 일자리 참여자도 자원이 종료된 경우로 가정한 것임

■ 행정처분(약정해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진행중인 경우

- ▶ 행정처분(약정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효력정지 결정'이 된 경우
→ 지원금 계속지급
- ▶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정수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된 경우 집행정지 이후 지급된 모든 지원금 환수 (사회적기업과-3186, 2011.11.23. 질의회시 및 법률자문)

Ⅰ 일자리창출지원 4명 참여: A, B, C는 적정, D는 부정행위자 의심(허위, 참여제한 자 등)

- ❶ 2023.3.14. 정기점검시 부정행위 확인(2022.7.1. 부정행위: D퇴사근로자 허위로 계속근무)되어 지급중지 (A, B, C, D)
- ❷ 의견제출 기간 부여: 3.14. ~ 4.3. (통상 10일 이상)
- ❸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처분: 2023.4.10. 약정해지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 ❹ 2023.4.30. 사업주 이의제기 (효력정지신청)
- ❺ 2023.5.10. 법원 효력정지결정
- ❻ 2023.4.10. 이후에도 지원금 계속지급
- ❼ 2023.8.10. 부정수급 판결 (최종)



⊗ (일자리창출) A, B, C는 2023.3.14.부터 환수, D는 2022.7.1.부터 환수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 (다른 재정지원사업) 2023.3.14.부터 지원된 지원금 환수(부정행위로 의심되어 지급중지한 경우 지급예시에 준하여 환수)
 - 부정수급으로 최종 판결된 경우: 지급중지 시점부터 지급된 지원금 반환처분
 -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 과오 지급금(담당자의 계산착오)에 대한 환수: 사업주가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 제기 (X) → 보조금 정산 또는 착오 지급시에도 미납시 강제징수 가능(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1197, 2012.11.14.)

7. 소멸시효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의 의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76.11.6. 76다148)

■ 소멸시효 기간: 5년 또는 10년

- ▶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5년
- ▶ 「민법」 제165조제1항: 10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법제처 법령해석: 07.10.1., 안건번호 07-0306, 13.10.25., 안건번호 13-0472>

■ 소멸시효의 기산점: ‘지원금 지급일’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민법 제166조제1항)

■ 주요 사례예시 ■

구 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예시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	2022.5.1.
불확정(不確定)기한부채권	기한도래를 안 때	추곡수매가 끝나면
기한이 없는 경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보조금 지급일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	공무원시험에 붙으면

- 보조금 반환의 기산점은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지급일’ 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15-8646 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2015.10.2.),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 판례 84누572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됨.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음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주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함
- 시효중단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됨(민법 제170조 ~ 제177조)

■ 주요 사례예시 ■

구 분	시효중단 기간
납부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민법 제178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민법 제178조제2항)

■ 주요 사례예시 ■

구 분	새로이 진행되는 시점
납부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
독촉 또는 납부최고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경과한 때
교부청구	▪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
압류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

■ 유의사항

- 독촉 후에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부동산, 채권, 자동차등의 재산을 압류해 놓아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 향후 법원 등을 통한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배분기일 통지, 채권신고 등 절차를 행할 수 있음

[참고] 소멸시효 관련 주요 규정**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 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시행일 : 2022. 2. 3.] 제39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8. 부정수급에 따른 명단 등 공표

■ 관련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 의 의

-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상 공표대상

● 보조금법

-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지방보조금법

-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공표범위(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공통)

-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 공표시기 및 기간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공통)

- 시기: 매년 3월 31까지
- 기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공표절차(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공통)

- 공표사실 사전통지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기회부여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공표

9. 행정처분 절차

■ 처분흐름

- ① 처분사유발생 → ②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③ 의견청취(의견청취 결과 반영) → ④ 처분의 통지 → ⑤ 처분이행 또는 불복제기(행정심판 또는 소송)

■ 구체적인 처분절차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참조)

- ① 처분사유 발생: 지도점검, 제보 등에 의한 조사



② 처분의 사전통지(법 제21조제1항)

-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처분으로 한정함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 부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 7. 11.)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작성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x297mm[백상지 (80g/m ²) 또는 중질지(80g/m ²)]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7.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7.28)

구술의견 기록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일시(장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진술요지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_____)
	성명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③ 의견의 청취(법 제22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가지 유형이 있음

구분	종류	의견제출	청 문	공 청 회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있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일반·간이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특별·정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특별절차
실시 요건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이익처분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실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제출기회의 제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 고려(10일 이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 청문개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 (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공청회개최 통지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제출방법: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청문실시 •청문일 출석진술 (의견서로 대체 가능)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각계로부터 추천·신청 받는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방법: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방법: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시 이를 반영하여 처분
적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경미한 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중대한 처분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제조·판매금지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 •해산명령, 철거·폐쇄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대상 불특정 다수 •주요법령의 제·개정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제도의 도입 •특정 구성원간의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③-1. 의견청취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 의견의 반영

-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
 - 의견제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
 - 청문: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 공청회: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2) 의견반영 방법 등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
 - 제출된 의견, 처분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반영
- 제출·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빙자료 등을 명백하게 제시

④ 처분의 통지

1) 신속처분의 원칙(법 제22조제5항)

- 행정청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처분의 문서주의 원칙(법 제24조제1항)

- 처분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
-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가능
 -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

⑤ 처분이행 또는 불복

1) 고지내용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
- 고지사항은 처분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2) 불복제기 종류

- 이의신청: 일부 개별법에 규정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기타 행정심판에 준하는 심사청구제도 등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청의 불복사항의 고지방법 예시

▶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의 종류, 제기기간, 제기기관 기타 불복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가급적 자세하게 고지

- 당해 법령에서 불복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지

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위 비공개(또는 부분공개)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비공개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비공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 또는 00장관(또는 도지사 등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00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고지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00시장(처분청) 또는 00도지사(재결청을 의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00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질의답변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발췌

Q1 '경고'를 발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 경고를 발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청취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경고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 경고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으로 당사자등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등에게 사전의견청취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1차 위반·2차 위반 등의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의 경고처분은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Q2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로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의견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전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임

Q3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와의 관계는?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보내면 됨

※ 처분시 의견청취는 청문실시·공청회 개최·의견제출 등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3종류를 하나의 조문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라고 통칭하고 있음

Q4 '지정취소 처분'이 청문대상인지?

- 행정처분이 청문대상인지 의견제출 대상인지의 판단은 개별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개별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제출을 거쳐 처분을 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중요한 박탈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벼운 처분의 경우에 청문실시 규정이 없으면 의견제출을 실시하면 됨
-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 없으나 지정요건의 특성 및 인증취소 처분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함

Q5 청문을 거친 후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의 취지가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에 있는 것이므로, 의견제출보다 더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하는 청문으로 상대방의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것에 해당되므로 다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Q6 의견청취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실시가 가능한지?

- 행정청은 각 법령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과 행정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들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청문실시 여부를 결정
 -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인가 등의 취소, 사용금지, 생산금지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인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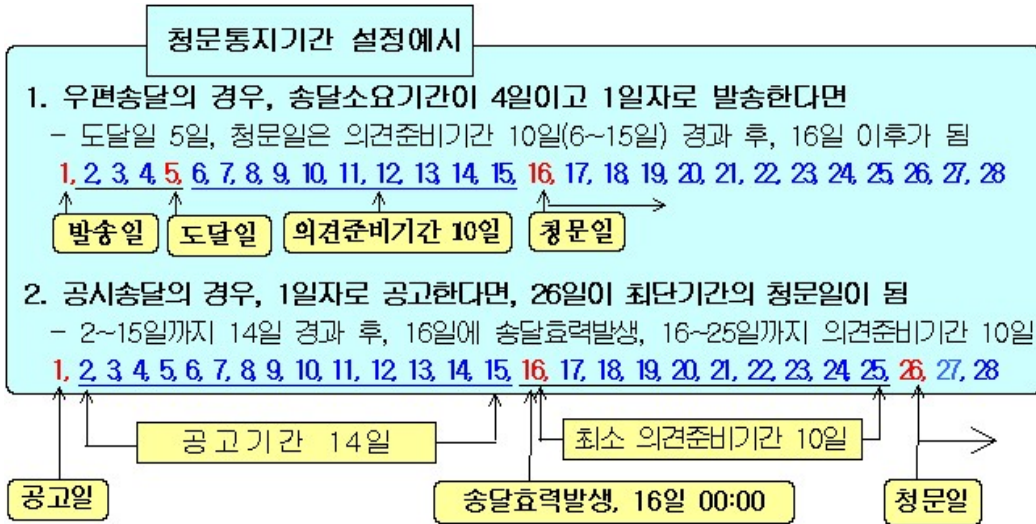
Q7 청문을 포기하고 즉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청에 청문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제출하면 청문절차 없이 처분을 받을 수 있음(청문포기서에 대한 특정서식은 없음)
- 즉시처분 여부는 행정절차법에서 신속처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분을 실시하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음

Q8 청문을 공개로 실시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 청문은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공개실시는 범위반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청문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신청 또는 공개로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청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청문일전까지 공개신청서를 제출(별지 제15호서식)

Q9 청문일을 정하는 기간산정 방법은?



청문실시 통지시 주의사항

- 송달 시기는 최소한 청문일부터 10일 전까지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도달 주의)하고
- 공시송달(공고일자는 공고기간 미포함)은 연락처를 찾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

재정지원일반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부정수급

재정지원세부조치



Q10 행정청과 건축사업주간에 체결된 약정서 해지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행정작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용 되는 범위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상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실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청과 건축주간에 이루어진 약정서나 그 약정의 해지 등도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건축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허가를 하면서 맺어지는 약정서는 행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정서의 해지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약정서의 해지가 ‘행정작용’에의 해당 여부보다는 ‘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계약의 위반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의견청취 절차 없이 해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지절차의 적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Q11 의견제출 실시요건 및 근거는?

-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청문·공청회·의견 제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청문과 공청회는 모두 ①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나,
- 의견 제출은 행정청이 청문과 공청회 대상이 아닌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직접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의 절차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음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4년 1월 인쇄

2024년 1월 발행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발행처 : 고용노동부

편 집 : 사회적기업과(044-202-7429)